문서번호	기획조정관 - 8512
보존기간	5년
시행일자	2013. 11. 21.

## 명품! 경북교육

## 2014학년도 공립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경상북도교육청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 차 례

제1장 2014학년도 주요 사항
I. 예산편성 시 반영할 주요 사항5
Ⅱ. <b>2014</b> 학년도 주요 변경 내용 ···································
제2장 2014학년도 공립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
I. 목적 ···································
Ⅱ. 적용 대상 ···································
Ⅲ.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성격 ···································
IV. 학교회계운용 일반사항
1. 회계의 설치단위13
2.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기한 14
3. 금융기관의 이용14
4. 학교회계의 범위15
V. 학교회계 예·결산 과정
1. 예산의 편성16
2. 예산안 심의·확정·······17
3. 추가경정예산18
4. 예산의 집행19
5. 결산

VI.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1. 예산편성 기본 방향 23
2. 사업별 예산구조 개요 23
3. 세입예산 24
4. 세출예산 29
VII. 행정사항
1. 학교회계의 재정건전성 유지 및 학교재정운영의 공개43
2. 학교회계 사고 예방44
3.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이용45
4. 학교회계 예산 및 결산 45
5. 기타사항46
[별첨] 201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과목체계 및 과목내용 47
[별첨] <b>2014</b> 학년도 학교회계 예·결산서 및 현황 서식 ·················61
[별첨] 201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단위단가표77
[별첨] 지원금 업무처리 절차 안내 87
[별첨] 2014학년도 학교회계 세부사업명 표준화 추진 계획 88
[별첨] 2014학년도 공립학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계획 91
<ul> <li>2014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 통합사업 내역 ······99</li> </ul>
<ul> <li>2014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 추가지원사업 내역 ················ 129</li> </ul>

# 2014학년도 공립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

# 제 **1** 장

## 2014학년도 주요 사항

- I. 예산편성 시 반영할 주요 사항
- Ⅱ. 2014학년도 주요 변경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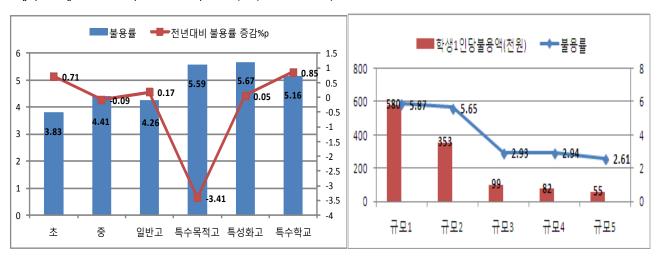


## I. 예산편성 시 반영할 주요 사항

#### 1. 불용액 과다 발생 방지 및 전년도 불용액 해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학교기본운영비 단가 동결
- 중학교 19학급 이상, 일반계고 25학급이상 교당경비 2%인상
- '12학년도 재정분석 결과 불용액 과다 발생(평균 4.17%)
- 학교일반운영(정책사업)의 불용률 8.38%
- 불용액을 추계하여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
- 유사·중복사업 통합 및 폐지하여 불필요한 예산 편성 억제

#### 《참고》2012학년도 학교회계 결산 자료



【학교급별 불용률 및 불용률 증감%p 】

#### 【규모별 불용액 및 학생1인당 불용률 】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초등학교	539,600,741	538,699,571	490,725,013	28,184,353	20,691,375	3.83
중 학 교	204,880,408	204,488,448	189,080,460	6,773,283	9,026,665	4.41
고등학교	209,416,104	209,082,964	187,984,015	11,394,043	10,038,046	4.79
특수학교	2,850,542	2,850,371	2,656,710	46,826	147,006	5.16
계	956,747,795	955,121,354	870,446,198	46,398,505	39,903,092	4.17



#### 2. 비정규직(학교회계직원 및 용역회사직원 등) 예산편성 철저

- 경비용역회사와 계약 시 관련 법령 및 계약서 확인 철저
- 최저임금이상 지급되도록 일숙직전담요원과 경비용역업체의 계약서 확인
- 학교와 경비용역업체간 계약시 일숙직전담요원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계약 서 작성시 관련법규 확인 철저
- 학교회계직원 직종별 정원 책정 기준 적용 철저
- 기관별, 직종별 정원 책정 기준
- 정원책정에 따른 인력관리 방향
- 무기계약 직종 추가 통합 및 분리 등

#### 3. 공통운영비 우선 편성

- 공공요금(전기요금 등) 및 인건비 우선 확보
- 부족 시 각종 목적사업비 잔액(100만원 이하) 적극 활용
- 시설유지를 위한 소규모 시설사업비 편성

#### 4. 지원금 처리 철저

- 교육청 등의 학부모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부모부담 중 지원금을 제외하고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중요 한 회계 처리
- 예산 과목이 아니며 지원금처리를 함으로써 결산시에만 나타나는 결산 과목
- 교육청 등으로부터 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와 지원금을 지출하여 수익자부담 수입으로 징수 할 때 회계처리를 확실히 해야 함. [별첨] 지원금 업무처리 절차 안내 참조

#### 5. 세부사업명 표준화 작업 및 시범학교 운영

- 변화하는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복잡·다양한 세부사업을 표준화 하여 예산관리의 효율성 도모
- '14학년도 14 ~ 16개 초·중·고·특수학교 시범운영, '14년 하반기 표준화 여부 및 시행시기 결정
- 시범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는 기존대로 예산 편성·운용



## Ⅱ. 2014학년도 주요 변경 내용

연번	2013학년도(현행)	2014학년도(개정)	쪽
1	나) 민간이전수입  ○ 기타지원금: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정부, 기관, 협회, 단체포함)부담금 수입	나) 민간이전수입	25
2	나) 수익자부담수입 ○ 급식비,,기숙사비, 기타수익자부담수 입	나) 수익자부담수입 · 급식비,,기숙사비, 누리과정비, 기타수익 자부담수입	26
3	2) 지원금수입(결산시에만 나타남)	2) 지원금수입(결산시에만 나타남)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부모부담 지원금      학교운영지원비지원금수입, 급식지원금수입, 방과후학교활동지원금수입, 현장체험학습지원 금수입, 청소년단체활동지원금수입, 졸업앨범 대금지원금수입, 교과서대금지원금수입, 기숙사지원금수입, 누리과정지원, 기타학부모부담 지원금수입	27
4	3) 행정활동수입 가) 사용료 및 수수료 · 운동장, 강당 등 ~	3) 행정활동수입 가) 사용료 및 수수료      학교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등), 교실, 강당, 운동장, 매점, 급식실 등 학교장이 관리하는 학교시설을 포함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득한 자로부터 수수하는 사용료와 학교물품의 대여로 발생하는 대여료는 학교회계의 자체세입으로 편성한다.	27
5	라) 교육격차 해소      저소득층자녀지원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자녀 지원 제 사업비로      특수교육대상자지원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제 사업비로 ~      기타교육격차해소 : 기타 교육 및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제 사업비로 ~	라) 교육격차 해소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지원비      학비지원, 급식비지원, 방과후학교교육비지원, 현장체험학습지원, 청소년단체활동지원, 졸업앨범대금지원, 교과서대금지원, 기숙사지원, 정보화지원, 누리과정지원, 기타교육격차해소 등      기타교육격차해소 : 위에 나열한 것 이외에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등에서 지원하는 학부모부당 지원금	30
6	3) 기본적 교육활동 : 표준 교수학습 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제 사업비	3) 기본적 교육활동 : 표준 교수학습 활동에 직 접 투입되는 제 사업비	31



연번	2013학년도(현행)	2014학년도(개정)	쪽
	가) 교과 활동	가) 교과 활동	
7	나)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 적응, 자치, 행사 및 ~	나)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 적응, 자치, 행사 및 ~ <b>현장체험학습활동 :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활동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b> 동아리활동 : 학술, 문화예술,~	31
8	5) 교육활동지원 가) 교무업무 운영 나) 연구학교 운영 다) 학습지원실 운영 ㆍ 방송실운영: 방송장비~ ㆍ 상담실운영: 상담실 등 운영 제 사업비 ㆍ 정보화실운영 ㆍ 공동실습소운영 ㆍ 학교상담실(Wee클래스)운영: 학교 부적응~ 라) 교육여건 개선	5) 교육활동지원: 교수학습~ 가) 교무업무 운영 나) 생활지도 운영   생활지도운영   생활지도여비, 상담봉사자회비, 학교지킴이, 녹색어머니회 등 교내외 학생생활지도에 소요되는 제 경비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맞춤형 대응,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학교역량제고및 관리 감독 강화 등 학교폭력대책에 소요되는 제 경비 다) 연구학교 운영 라) 학습지원실 운영   방송실운영: 방송장비~   학교상담실운영: 상담실 등 운영 제 사업비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학교상담실(Wee를 래스)등 운영 제 사업비   진로진학상담실 등 운영 제 사업비   정보화실운영   공동실습소운영	33
9	다) 일반행정 관리  · 행정지원인력운용 : 행정(사무)보조원(학부  모회직원 포함) 인건비, ~	다) 일반행정 관리  · 행정지원인력운용 : <b>행정실무원</b> (학부모회직원  포함) 인건비, ~	34
10	1) 인건비 가) 기타직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1) 학교회계직원 개요 (2) 학교회계직원의 관리   학교회계직원의 신규채용은 관할청(유·초·중 학교는 지역교육청, 고·특수학교는 도교육청) 과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미이행 시 예산지원이 불가함.   결원 등 학교회계직원 채용은 지역교육청 인	1) 인건비 가) 기타직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1) 학교회계직원 개요 (2) 학교회계직원의 관리 • 『학교회계직원 직종별 정원 책정 기준』에 따른 관리 철저 - 기관별 정원 책정 기준 - 정원 책정에 따른 인력 관리 방향 - 무기계약 직종 추가 통합 및 분리	35



연번	2013학년도(현행)	2014학년도(개정)	쪽
	력풀제에 등록된 무기계약 직원을 우선 채용 하도록 한다.	- 무기계약(제외) 직종 인력관리 방안 등 • 학교지원과 자료실 게제 또는 공문 시달 예정	
11	나) 학부모회(구 육성회)직원 인건비(초등학교, 특수학교는 해당) (3) 학부모회직원 정원기준 및 임용관리	나) 학부모회(구 육성회)직원 인건비(초등학교, 특수학교는 해당) (3) 학부모회직원 정원기준 및 임용관리 • 학부모회직원의 정원은 별도로 없으며 행정실 무원 정원으로 통합 관리됨. 단, 종전 기준에 의해 채용된 학부모회직원은 계약해지일까지 고용관계 및 보수체계를 유지 하며 정원을 초과운영할 수 있고 결원에 따른 신규채용시 반드시 연봉제로 계약한다.	35
12	<ul> <li>운전수당 : 운전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월40,000원 이내의 운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li> <li>단,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운전수당을 지급 받 는 자는 제외한다.</li> </ul>	삭제	37
13	2) 운영비 가) 학교운영비 (1) 일반운영비 · ~ 급식용식재료비, 여비,~	2) 운영비 가) 학교운영비 (1) 일반운영비 · ~ 급식용식재료비, <b>우유대금</b> , 여비,~	39
14	(2) 교육운영비     교육운영비(교구, 기자재구입 및 유지보수 비, 학교행사비, 도서관 운영비 등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학습준비물, 학생복지비 (저소득층학생지원비, 급식지원비 등의 지원금 및 장학금, 동아리 지원비, 학생자치활동, 학생안전공제회비, 학생보건검사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교육운영비 : 교구·기자재구입(자산성 물품 은 비품구입비 목에 편성) 및 유지보수비, 교육용 재료비, 교육활동숙박비, 식비, 차량임 차료, 교통비, 학생여비, 학교행사비, 학생대 회출전비, 도서관운영비, 학급교육활동경비 등	40
15	성질별 분류상 학교운영비의 일반운영비에서 업무추진비의 일반업무추진비로 변경됨.	나) 업무추진비 (1) 일반업무추진비	40 41



연번	2013학년도(현행)	2014학년도(개정)	쪽
		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	
		Ы	
	자산취득비에 기타자산취득비 추가	3) 자산취득비	
		라) 기타자산취득비	
16		• 수목, 소프트웨어 구입 및 기타유·무형자산	42
		등 구입비	

# 제2장

2014학년도 공립학교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I. 목적
- Ⅱ. 적용대상
- Ⅲ.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성격
- Ⅳ. 학교회계운용 일반사항
- V. 학교회계 예·결산 과정
- Ⅵ.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 Ⅶ. 행정사항
- □ 부록



#### 2014학년도 공립학교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

#### I. 목 적

본 지침은 「경상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0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공립학교의 학교회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Ⅱ. 적용 대상

본 지침은 경상북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 · 운영되는 유치원회계 및 학교회계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율학교의 학교회계에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와 인건비 및 제수당, 학교장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지침의 적 용을 달리할 수 있다.

#### Ⅲ.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성격

본 지침은 「경상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제10조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구체 적인 집행명령이며, 학교회계의 예산편성은 본 지침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관계기관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가 수반될 수 있음

#### Ⅳ. 학교회계운용 일반사항

#### 1. 회계의 설치단위

가. 학교회계는 공립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학교별로 설치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경상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7조에 따라 통합운영학교는 단일 회계를 설치 · 운영할 수 있으나, '10년도부터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전면 도입으로 통합ㆍ병설학교(초ㆍ중, 중·고등학교)에서는 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한다.

- 나. 분교 및 분교장의 회계 설치단위 및 운영
  - 1) 분교 및 분교장의 경우 별도로 회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본교에 단일 회계를 설치 · 운영한다.
  - 2) 단, 매월 반복되는 경상경비 및 학교회계 업무처리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연도 최초 교부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분교장의 교직 원 중 1명을 임시출납원으로 지정 임명하여 매월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출납원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 익월 5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한다.
- 다. 병설유치원의 회계는 해당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기한

- 가.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개시하고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 나. 학교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 3. 금융기관의 이용

- 가. 학교회계 출납기관의 보관 및 지출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은 가급적 도교 육청이 금고로 계약한 금융기관을 권장하고, 학교 인근의 제1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로 주거래 계좌를 개설ㆍ이용할 수 있다.
- 나. 학교회계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율 및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유휴자금을 안전한 금융기관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다만, 타 금융기관에 유휴자금을 예치할 경우 채권보존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회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 4. 학교회계의 범위(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 가. 세입

학교회계의 세입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지출의 원인이 되는 일체의 수입으로 한다.

- 1)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 3)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 5) 사용료 및 수수료
- 6) 이월금
- 7) 물품매각대금
- 8) 그 밖의 수입
  - ※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등 학교회계의 세입으로 정하지 아니한 세입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으로 납부한다.

#### 나. 세출

학교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 및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로 한다.

- 1) 인적자원운용 교직원기타보수,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 2) 학생복지 / 교육격차 해소 급식관리, 기숙사관리, 보건관리, 교육격차해소, 학생 장학 지원. 기타 학생복리 서비스
- 3) 기본적 교육활동 교과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 4) 선택적 교육활동 방과후학교 운영, 평생교육, 직업교육, 국제교육, 독 서활동, 교기육성,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 5) 교육활동 지원 교무업무 운영, 연구학교 운영, 학습지원실 운영, 교육 여건 개선
- 6) 학교 일반운영 부서 기본 운영, 시설 장비 유지, 일반행정 관리, 학교운영 협력, 학부모 지원
- 7) 학교시설 확충 시설확충 및 개선
- 8) 학교 재무활동 반환금, 예비비



#### V. 학교회계 예·결산 과정

#### 1. 예산의 편성

#### 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시달

관할청(지역교육청: 유·초·중학교, 도교육청: 고·특수학교)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작성ㆍ시달한다.

#### 나. 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예산안의 편성

학교장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시달되면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연간 학교 교육시책 및 학교예산편성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직 원 등으로부터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예산 요구서를 개인별 또는 부서별로 제출 받아 소속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한다.

#### 다. 전입금 교부계획 통지 및 예산사정

- 1) 관할청은 단위학교의 계획적, 자율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각 학교별로 연간 배정될 학교회계 전출금의 총 규모 및 분 기별 또는 월별 자금 교부계획을 확정 · 통보하여야 한다.
- 2) 학교장은 관할청으로부터 전입금 교부계획이 통지되면 학교의 연간 세입 예산을 확정하고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교직원회의 또는 부장회의를 통해 예산을 조정하고 학교장의 결 재를 받아 예산안을 확정한다.
  - ※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학교의 기본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를 말한다.

#### 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예산안 제출

학교장은 위의 과정을 거쳐 편성한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예산안 심의 • 확정

#### 가. 예산안 통지

학교운영위원장은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 나. 예산심사소위원회의 구성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 심의의 효율화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 로써 예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위원장은 본회의 에서 심의 의견을 설명하여야 한다.

#### 다. 학교장의 제안 설명

예산안 심의를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개최시 학교장은 예산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한다.

#### 라. 교직원 의견 청취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 심의시 필요한 경우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 마. 증액 및 새로운 세부사업의 설치 금지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 심의시 학교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의 각 세부 사업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세부사업을 설치할 수 없다.

#### 바. 예산확정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심의한 후 학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학교장은 예산을 확정한다.



## 『예산의 절차』

	·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전년도 11월말)까지 단위학교에 시달		
학교회계 예산편성	- 관할청의 예산편성 기본 방향		
기본지침 시달	- 교육시책사업		
	- 예산과목 및 과목해소 등 학교예산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내용		
<b>↓</b>			
교직원의 예산요구서 제출	· 예산편성지침 시달 후 학교예산편성방향 및 계획에 따라 제출		
	- 교육과정운영 및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재정 소요액 등		
	기록		
	- 부서별 또는 개인별 예산요구서 제출		
<u></u>			
연간 총 전출금	· 관할청으로부터 학교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의 총 규모 및 분기별		
규모 및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통보		
예산배정계획 통보	- 목적사업의 경우 대상학교가 지정되는 대로 확정·통보		
<u></u>			
예산조정 작업 및	· 단위학교의 총 세입규모를 확정		
예산안 확정	- 부서별 또는 전체 조정회의를 거쳐 예산안 확정		
<u></u>			
예산안 제출	· 회계연도 개시 30일전(1월말)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downarrow$			
예산안 심의	· 학교운영위원들에게 회의개최 7일전까지 통보		
	-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심의종료, 학교장에게 결과 통보		
<u></u>			
세시하기	하고지이 세시 하지		
예산확정	· 학교장이 예산 확정		

#### 3. 추가경정예산

#### 가. 편성요건

1)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즉, 예산편성시기와 예산이 집행되는 시기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 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 사태의 발생, 학교재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당초 예 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편성한다.



2)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이다. 즉,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기존 예산금액의 과부족, 예산목적의 변경, 비목간 조정 등 재정수요의 변경으로 기존예산의 추가증액, 삭감 또는 경정의 사유가 발생하여 예산의 규모와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다.

#### 나. 편성 시 유의사항

- 1) 당초 세입예산에 이월금으로 편성한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후 결산액과 차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 2)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경비가 추가경정예산에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해야 한다.
- 3)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전에 예산의 이 · 전용으로 감액한 과목의 예산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4) 관할청에서 통보된 학교회계전입금,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4. 예산의 집행

#### 가. 집행의 워칙

확정된 예산은 정해진 목적에 따라 자금의 수급 등 학교의 재정여건을 감안 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나. 예산 미확정 시 준예산 집행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경비를 집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한 것으로 본다.

- 1) 교직원 등의 인건비
-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 3) 학교시설의 유지 관리비
- 4)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명시이월비, 계속비 등)



#### 다. 성립전예산집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선택적교육수입(수익자부담금)은 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된 경비라도 그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소요 전액이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다.
- 2) 선택적 교육수입의 수익자부담금이라도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비는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다.
- 3) 성립전예산 집행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예산집행에 따른 시일이 충분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ㆍ전용

#### 1)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세출예산의 집행 시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예산편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에 정해진 목적 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 2) 예산의 이용

세출예산은 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집행상의 필요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3) 예산의 전용

학교장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산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건비, 시설비를 제외한** 동일한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목, 동일한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간 목으로 전용을 할 수 있다.

#### 4) 예산의 이·전용의 제한

- 가)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이·전용은 할 수 없다.
- 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에는 이·전용을 할 수 없다.
- 다) 업무추진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전용을 할 수 없다.



- 라) 선택적 교육수입의 수익자부담금, 인건비, 시설비는 다른 과목으로 이·전용을 할 수 없다. 단, 다른 비목에서 인건비, 시설비로의 이·전용은 가능하다.
- 마) 이·전용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추경예산편성 후 집행이 가능한 경우는 추경예산편성 후 집행하여야 한다.

#### 마. 세출예산의 이월

#### 1) 명시이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 되는 경우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 사고이월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 한 부대경비 포함)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3) 계속비이월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구 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내용상요건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로써 세입·세출 예산서에 명시(예산 성립 시점)	당해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회계연도말 시점)
절차상요건	학교운영위원회 사전심의	사전심의 불필요
재이월	지출원인행위액에 대하여 사고이월 (재이월) 가능	재사고이월 불가

#### 5. 결산

#### 가. 예산회계 결산

학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학교회계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결산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예비비 사용 내역
- 2) 세출예산 이 · 전용 내역
- 3)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 계속비 이월 내역
- 4) 기타 결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

#### 나. 결산심의의 절차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산서 심의는 예산안 심의의 절차에 준한다.

#### 다. 결산심의 결과 통보

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 심의 후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안에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결산의 절차』

회계연도 종료	·매년 2월 말일 기준		
	- 당해 회계연도의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 종료		
<b>\</b>			
출납폐쇄정리	·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3월 20일)을 기준으로 폐쇄		
	- 당해 회계연도에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가 된 사항의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출 마감		
<b>↓</b>			
결산서 작성	· 제장부 마감 및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 예산 이·전용 내역, 이월경비내역, 예비비사용내역 첨부		
↓			
결산서 제출	· 회계연도 종료 후 2월(4월말)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b>↓</b>			
결산심의	· 학교운영위원들에게 회의개시 7일전까지 결산서 개별 통보		
	- 단위학교의 장이 결산안 내용 설명,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련 교직원 의견 청취		
<u> </u>			
결산안 심의결과 통보	·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6월말) 이내에 결산심의결과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		



#### Ⅵ.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 1. 예산편성 기본 방향

- 가. 학교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지도록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한다.
- 나.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직접교육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등 간접교육경비는 필요한 적정수준에서 편성한다.
- 다. 예산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의 참여 및 의견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질적 심의가 보장되도록 한다.
- 라. 학교예산은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공개하여 학교 경영과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다.

#### 2. 사업별 예산구조 개요

가. 세입예산: 『장-관-항-목』 구조

나. 세출예산: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구조

다.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은 교육부에서 설정하고, 세부사업은 교육부 권장안 참고

#### 사업별 예산구조 정책사업 8개 단위학교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상위 사업 분류이며, 1 (교육부) 하부사업인 단위사업 설정 근거가 됨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며, 단위사업 32개 (2) (교육부) 사업 성격별로 통합·단순화한 사업분류로 세부사업의 묶음 세부사업 권장안 | 단위사업을 구성하는 세부내역으로 각 사업담당자가 실제 운용하는 (3) (교육부) 최소단위의 사업 ·경비의 성질별 분류 4 원가통계비목 ·복식부기 자동분개



#### 3. 세입예산

#### 가. 이전수입

- 1) 중앙정부이전수입
  - ㅇ 중앙정부에서 교부하는 국고보조금

####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광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 등을 말하며 보조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 ㅇ 예정에 없던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단, 해당 기관에서 소요자금이 전액 교부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전예산 집행을 할 수 있다.

#### 3)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 ㅇ 관할청은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단위학교에 전입금의 연간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통보한다.
- ㅇ 회계연도 중에 관할청으로부터 지원되는 목적사업비전입금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계상한다.

#### 4) 기타이전수입

#### 가) 학교회계간이전수입

- ㅇ 학교발전기금전입금: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학교발전 기금 전입금
  - ※ 학교발전기금은 원칙적으로 학교회계와 구분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로 관리하되, 회계운영의 효율화, 사업목적의 효율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회계로 전출한 경우에만 학교회계의 세입으로 편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 ㅇ 다른학교회계전입금: 같은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가 전출하는 전입금



ㅇ 기타학교회계전입금: 같은 학교 내 학교기업회계가 학교회계로 전출 하는 학교기업회계전입금 또는 위 항목 이외의 같은 학교 내 타회계 에서 이전되는 학교 내 타회계 전입금

#### 나) 민간이전수입

ㅇ 기타지원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기관(공공의 성격 이 있는 기관)등이 지원하는 지원금.

단, 기업, 협회,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학교발전기금으로 처리

#### 나. 자체수입

#### 1) 학부모부담수입

#### 가) 등록금

#### (1) 학교운영지원비

- ㅇ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지원을 위해 징수하는 고등학 교의 학교운영지원비
  - ※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않음.
- ㅇ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능력, 물가에 미치는 영향, 지역 실정, 수업료 변동률 및 학교의 재정소요를 고려하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 교장협의회 등에서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금액 책정 및 징수 금지
- ㅇ 학교운영지원비는 반드시 학교운영지원비로 운영되는 인건비와 학생 교육과 직접 연관되는 사업 등에 우선 편성ㆍ집행한다.

####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방법】

- 학교운영지원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 학생 전·출입시 전입생의 학교운영지원비는 전입 익월분부터 징수하고, 전출생의 학교운영지원비는 전출하는 월분까지 징수한다. 자퇴시는 자퇴하 는 날을 기준으로 당해 징수한 월 또는 분기 전체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 하여 반환하며 자퇴생에 대한 미수납금은 불납결손 처리할 수 있다.

#### 【학교운영지원비의 면제 및 감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으며, 면제(감면)대상으로 결정된 자에게는 감면사항을 서면통지하고



감면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보호를 받는 자
- 수업료 감면기준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자
- 기타 학교장이 감면대상으로 추천하는 자

#### 나) 수익자부담수입

- ㅇ 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청소년단체활동비, 졸업 앨범대금, 교과서대금, 기숙사비, 누리과정비, 기타수익자부담수입
- ㅇ 수익자부담수입은 학교급식비, 수학여행비 등과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 하는 경비로서 학교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반드시 편입하되 세입· 세출예산액이 같도록 편성한다.
- ㅇ 예산편성 당시 예정에 없던 수익자부담수입은 성립전예산으로 집행 할 수 있으며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해 사업계획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사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 수익자부담수입은 다른 과목으로 이·전용할 수 없고, 해당 사업이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집행잔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잔액이 소액이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하 여는 이월하여 학생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 또는 전년도 해당과목으로 계상할 수 있다.
- 수익자부담수입은 각 사업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편성·관리하여야 한다.
- ㅇ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과 수익자부담수입 사업이 동일한 경우 세입은 구분 계상하고, 세출은 정책-단위-세부사업별 예산구조에 맞게 계상 하다.
- ㅇ 수익자부담수입의 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학교 관계자(교직원)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는 학교 예산에 별도 계상한다.
  - 현장체험학습 인솔·지도교사 관련 경비의 예산 반영
  - 수련기관 등과 계약 시「교직원은 무료」로 하는 계약 금지
  - ※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1239(2008.10.10.), 감사공보담당관-4129(2008.10.16.)



ㅇ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중 법령에 의하 여 교육 보호를 받는 학생 등에 대하여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경 우 학교장은 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2) 지원금수입(결산시에만 나타남)

- ㅇ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부모부담 지원금
- ㅇ 학교운영지원비지원금수입, 급식지원금수입, 방과후학교활동지원금수 입, 현장체험학습지원금수입, 청소년단체활동지원금수입, 졸업앨범대 금지원금수입, 교과서대금지원금수입, 기숙사지원금수입, 누리과정지 원, 기타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 지원금수입과목은 예산편성시 사용하지 않으며(예산액 없음), 결산시 자동 생성됨

#### 3) 행정활동수입

#### 가) 사용료 및 수수료

- ㅇ 학교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등), 교실, 강당, 운동장, 매점, 급식실 등 학교장이 관리하는 학교시설을 포함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를 득한 자로부터 수수하는 사용료와 학교물품의 대여로 발생하는 대여료는 학교회계의 자체세입으로 편입한다.
- ㅇ 식당, 매점, 자판기사용료 등은 자체세입으로 사용한다.
- 각급학교에서 매점, 자판기 등을 설치·운영할 때는 임대수입과 지 출명세를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직원,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학생들의 복지와 직접 관련된 예산으로 집행한다.
- ㅇ 위탁업체가 부담하는 학교시설 사용료 세입은 노후급식시설 개선 및 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 재원으로 우선 사용한다.
- ㅇ 현금으로 징수하여 학교에서 직접 사용하는 수수료, 고등학교 입학 시험수수료 등은 학교회계의 세입으로 편입하고 징수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수시 징수되는 제증명수수료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관리하여 월(이하) 단위로 학교회계 세입으로 징수할 수 있다.
- ※ 학교시설 사용료에 대한 세입금은 반드시 세출예산편성 시 학교시설 장비유지비에 편성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2011.5.20.)



- 학교시설 사용료는 반드시 학교회계에 세입처리하고, 지출은 세출예산으로 편성 하여 집행
- 기본사용료 이외에 실비로 징수하는 관리비, 청소비, 전기료 등도 반드시 학교 회계에 편입
- 세입세출외현금계좌, 개인계좌 등 학교회계계좌 이외의 계좌를 통한 사용료, 실비 등의 징수 금지

#### 나) 자산수입

○ 토지, 건물, 기계장치, 사무기기, 도서 등 자산매각 수입

#### 다) 적립금처분수입

- 노후교실 증·개축, 잔디운동장 보수 등 대규모 사업을 위한 적립금 처분 수입(적립금 이자 수입 포함)
- ㅇ 적립금을 처분하여 일반재원화 할 경우의 적립금 처분 수입

#### 라) 보증금회수

ㅇ 워어민교사 주택 임차보증금 등 보증금 회수 수입

#### 마) 기타행정활동수입

- ㅇ 지난년도수입: 지난년도 징수결정 하였으나 미수납된 금액을 당해연 도에 수납하는 행정활동 수입(학부모부담수입은 해당과목에 계상)
- ㅇ 이자수입: 학교회계, 세입세출외현금 등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
- 기타행정활동수입: 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의 행정활동 수입

#### 다. 기타수입

#### 1) 전년도이월금

#### 가) 순세계잉여금

ㅇ 전년도 학교회계에서 발생하는 불용액(추계)으로 당해 연도에 이월 되는 순세계잉여금

#### 나) 보조금사용잔액

ㅇ 전년도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 등의 사용 잔액으로 반납하여야 할 금액

#### 다) 이월금

ㅇ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예산현액으로 관리)



※ 세입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별첨] 2014학년도 공립학교 학교회계 예산과목 체계 및 과목 내용에 따른다.

#### 4. 세출예산

#### 가. 사업별 세출예산의 구조

1) 인적자원 운용 : 교직원 보수 등 인적자원 운용 제 사업비

#### 가) 교직원 기타보수

- ㅇ 교직원대체인건비 : 출산휴가, 장기병가 등 정규직 교직원(상용직 학교 회계직원 포함)을 대체하는 기간제 교원 행정대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
- ㅇ 학교운영지원비수당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교직 원에게 지급하는 교원연구비, 직책수당, 관리수당 등 학교운영지원비 재원 수당

#### 나)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 ㅇ 교직원연수 : 교직원(학교회계직원 포함)의 교수 및 직무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한 제 사업비
- ㅇ 교직원복지 : 교원, 행정직원, 학교회계직원(비상용직 포함)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비
- ㅇ 맞춤형복지 : 학교회계직원(비상용직 포함)에 대한 맞춤형복지비
- 2)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 학생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제 사업비 가) 급식 관리
  - o 학교급식운영 : 학교급식소(실) 운영, 우유 유·무상 공급비 등 학교 급식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영양사, 조리종사원 등 급식 관련 학교 회계직원 인거비
  - ㅇ 위탁급식운영 :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제 사업비

#### 나) 기숙사 관리

ㅇ 기숙사운영: 기숙사 운영 제 사업비

#### 다) 보건 관리

- ㅇ 학생안전관리 : 학생 치료 등 학생 안전관리 관련 제 사업비
- ㅇ 학교환경위생관리 : 학교 학습환경, 시설 등 제반 환경위생 관련 제



사업비

- ㅇ 학생건강관리 : 학생 건강진단 등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관련 제 사업비
- ㅇ 보건실운영 : 약품 구입 등 보건실 운영 제 사업비

#### 라) 교육격차 해소

- ㅇ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지원비
- ㅇ 학비지원, 급식비지원, 방과후학교교육비지원, 현장체험학습지원, 청소 년단체활동지원, 졸업앨범대금지원, 교과서대금지원, 기숙사지원, 정보 화지원, 누리과정지원, 기타교육격차해소 등
- ㅇ 기타교육격차해소 : 위에 나열한 것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부모부담 지원금

#### 마) 학생 장학 지원

ㅇ 학생장학금지원 : 내/외부 학생 장학금 지원 제 사업비

#### 바) 기타 학생복리 서비스

- ㅇ 졸업앨범제작 : 졸업앨범 제작 제 사업비
- ㅇ 학생교과서구입 : 학생교과서 구입 제 사업비 ※ 교사용 교과서(지도서) 구입은 [단위사업:교과활동]에 편성
- 기타 학생복지 : 교복 물려주기, 통학차량운영지원, 학교 매점 관리, 학생증 제작 등 기타 학생복지를 위한 제 사업비

#### 3) 기본적 교육활동 : 표준 교수학습 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제 사업비

#### 가) 교과 활동

- ㅇ 기본교수학습활동지원 : 단위학교가 표준 교육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교육과정에 명시된 모든 교과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구·설비와 재료를 구입하고 유지·관리하는 제 사업비
- ㅇ 국어 교과활동 : 국어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 사회(역사,도덕) 교과활동 : 사회(역사,도덕)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 ㅇ 수학 교과활동 : 수학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 과학(실과,기술,가정) 교과활동 : 과학(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 ※ 과학의달 행사, 과학경진대회 출전비는 [단위사업:창의적체험활동]에 편성



- ㅇ 체육 교과활동 : 체육교구 구입 등 체육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 ※ 학생체육대회비, 체육대회출전비는 [단위사업:창의적체험활동]에 편성
- 예술(음악,미술) 교과활동 : 악기수리비 등 예술(음악,미술)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 외국어(영어,제2외국어) 교과활동 :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 ㅇ 특수교육 교과활동 :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 ㅇ 진로교육 교과활동 : 진로교육 교과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 ㅇ 학력신장 : 보충과정 운영, 기초학력지도, 수준별 이동수업 등 학력신장에 투입되는 제 사업비
- ㅇ 전문 교과활동 : 기계, 전자, 자동차, 토목, 원예 등 특성화고 전문 교 과활동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 ㅇ 기타교과활동 : 기타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 교내 교과협의회 운영 등 기타 교수학습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제 사업비

#### 나) 창의적 체험활동

- ㅇ 자율활동 : 적응, 자치, 행사 및 창의적 특색활동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 ㅇ 현장체험학습활동 :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활동에 소요 되는 제 사업비
- 동아리활동 : 학술, 문화예술, 스포츠, 실습노작 및 청소년단체 활동,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 봉사활동 : 교내봉사, 지역사회봉사, 자연환경보호 및 캠페인 활동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 ㅇ 진로활동 : 자기이해, 진로정보탐색, 진로상담 및 진로체험 활동에 소요 되는 제 사업비
- 4) 선택적 교육활동: 표준교육활동이 아닌 선택적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가) 방과후학교 운영
  - ㅇ 방과후학교운영 : 교과의 보충, 특별활동의 체계화 등 교수 학습활동의 여러 영역에 걸쳐 운영되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재원의 일부가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정규 수업과정 외 방과후학교 운영 제 사업비
  - ㅇ 기타 방과후학교운영 : 방과후 보육교실, 돌봄교실 운영, 토요스포츠



강사 운영 등 제 사업비

#### 나) 평생교육

ㅇ 평생교육운영 :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체육 등 평생교육 제 사업비

#### 다) 직업교육

ㅇ 직업교육운영 :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선택적 직업교육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 라) 국제교육

ㅇ 국제교육운영 : 외국학교와의 국제교류 등 국제교육 관련 제 사업비

#### 마) 독서활동

ㅇ 독서활동운영 : 도서구입, 도서관운영, 교원 독서교육역량강화 등 독서 활성화를 위한 제 사업비

#### 바) 교기육성

- ㅇ 운동부운영 : 축구, 야구, 육상, 수영 등 전문적 운동부 운영 및 육성 등 제 사업비
- ㅇ 기악부운영 : 전문적 기악부 운영 및 육성 등 제 사업비

#### 사)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 ㅇ 영재교육운영 : 영재교육운영 등 위에 제시하지 않은 선택적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 ㅇ 기타 선택적 교육운영 :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등 학생의 학원위탁 교육비 등 외부기관 및 시설로 학교교육을 일부 위탁한 경우 소요되는 제 사업비
- 5) 교육활동지원: 교수학습 간접 교육비로 교육활동 지원 제 사업비

#### 가) 교무업무 운영

- ㅇ 교무학사운영 : 교수학습에 직접 투입되지 않으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제 사업비로 출석부 구입, 교내 · 외 학생생활지도 등 교무학사 운영을 위한 사업비
- ㅇ 교육과정평가 : 학생 평가 소요 제 사업비, 학부모 시험감독 운영 제 사업비, 학생 평가 협의회 운영 제 사업비 등 교수학습 간접비



## 나) 생활지도 운영

- 0 생활지도운영
  - 생활지도여비, 상담봉사자회비, 학교지킴이, 녹색어머니회 등 교내외 학생생활지도에 소요되는 제 경비
  -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맞춤형 대응,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학교역량제고 및 관리 감독 강화 등 학교폭력대책에 소요되는 제 경비

#### 다) 연구학교 운영

ㅇ 연구학교운영 :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 제 사업비

#### 라) 학습지워실 운영

- ㅇ 방송실운영 : 방송장비 구입 등 방송실 운영 제 사업비
- ㅇ 학교상담실운영 : 상담실 등 운영 제 사업비
  -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학교상담실(Wee클래스)등 운영 제 사업비
  - 진로진학상담실 등 운영 제 사업비
- ㅇ 정보화실운영 : 정보화실 운영 제 사업비
- ㅇ 공동실습소운영 : 공동실습소 운영 제 사업비

#### 마) 교육여건 개선

○ 교육환경개선 : 교수학습 및 학교행정을 위한 시설·장비의 개선을 위한 사업비

## 6) 학교 일반운영 : 학교 기관 및 부서 운영을 위한 제 사업비

#### 가) 부서 기본 운영

- ㅇ 부서기본운영 : 교장실, 행정실, 교무 각 부서의 기본 운영을 위한 제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
- ㅇ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 : 방송통신고등학교 기본 운영을 위한 제 사업 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

#### 나) 시설 장비 유지

- ㅇ 학교시설장비유지 : 전기/수도/통신 시설 등 학교시설 유지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용역비 등 기본적 경비 및 시설관리를 위한 제 사업비
  -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대규모 수선비 및 시설사업비는 [단위사업:



시설확충및개선]에 편성

#### 다) 일반행정 관리

- 행정지원인력운용 : 행정실무원(학부모회직원 포함) 인건비, 공익근무 요원 인건비 등 행정지원을 위한 인력 제 사업비
- ㅇ 일반행정 사무관리 : 학교 사무용품 구입, 사무용기기 구입 및 수리 등 일반행정 사무관리를 위한 제 사업비

#### 라) 학교운영 협력

- ㅇ 학교운영위원회운영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 사업비
- ㅇ 유관기관협력 : 유관기관 협력을 위한 제 사업비

#### 마) 학부모 지원

- ㅇ 학부모지원 :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위한 학부모회 지원 및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등 학부모지원 제 사업비
- 7) 학교시설 확충 : 대규모 수선비, 교실 증ㆍ개축 등 시설 사업비

## 가) 시설확충 및 개선

- ㅇ 시설확충및개선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입찰(2인 이상 견적서 제출 포함)을 하는 경우 등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로 호우피해 복구공사, 교실 개축 등 학교시설 확충 및 개선
- 8) 학교 재무활동 : 목적사업비 반환 및 예비비 관리 등 비사업성 재무활동 가) 반환금
  - ㅇ 반환금 : 전년 목적사업비 등 집행 잔액 반환
  - 나) 예비비

#### 나.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 일반사항

- 1) 인건비
  - 가) 기타직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 (1) 학교회계직원 개요
      - ㅇ 학교회계직원은 통상 '학교에서 교육, 급식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학교회계 등에서 보수를 받는 자'를 말한다.
      - ㅇ 학교회계직원(비정규직)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이에 따라 근무조건을 정하되,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각급학교 인사



관리규정(취업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학교회계직원의 관리
  - ㅇ 『학교회계직원 직종별 정원 책정 기준』에 따른 관리 철저
    - 기관별 정원 책정 기준
    - 정원 책정에 따른 인력 관리 방향
    - 무기계약 직종 추가 통합 및 분리
    - 무기계약(제외) 직종 인력관리 방안 등
  - ㅇ 학교지원과 자료실 게제 또는 공문 시달 예정
- (3) 인거비 지급기준
  - ○「각급학교 학교회계직원 취업규칙(인사관리규정)」 및 사업추진부서 개별지침에 의거 산정 지급
  - ㅇ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법정 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의함

#### 나) 학부모회(구 육성회)직원 인건비(초등학교, 특수학교는 해당없음)

- (1) 인건비 지급기준
  - ㅇ 학부모회직원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여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상한선 4호봉) 기준으로 지급하되, 각급학교 학교회계직원 인사 관리규정(취업규칙)에 의거 산정·지급한다.
    - 단. 성과상여금, 맞춤형복지비 등 별도 지침이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그 지침을 준용한다.
    - ㅇ 연봉제를 적용받는 학부모회직원은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에 따른다.
- (2) 보수의 지급일 및 지급기간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 ㅇ 정근수당: 3월, 9월에 지급
  - ㅇ 명절휴가비: 설, 추석이 속하는 월에 지급
  - ㅇ 연가보상비: 2월에 지급
- (3) 학부모회직원 정원기준 및 임용관리
  - ㅇ 학부모회직원의 정원은 별도로 없으며 행정실무원 정원으로 통합 관리됨.
  - 단, 종전 기준에 의해 채용된 학부모회직원은 계약해지일까지 고용관



계 및 보수체계를 유지하며 정원을 초과운영할 수 있고 결원에 따른 신규채용시 반드시 연봉제로 계약한다.

#### 다) 퇴직금

#### (1) 지급 대상

1년 이상의 학교회계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 기준법 제34조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2) 퇴직금 산정방법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산정

#### 퇴직금 = 월 평균임금×(근무년수 + 1년미만 근무일수/365일)

- ※ 월 평균임금 = (퇴직전 3월간 지급임금총액/퇴직전 3월간 총 일수)×30
- ※ 퇴직전 3월간 지급임금총액 = 퇴직전 3월간 월정임금총액+(퇴직전 1년간의 비월정 임금 총액 × 3/12)
- ※ 월정임금: 본봉, 가계지원비,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
- ※ 비월정임금: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 등 비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 단,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은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임금 에서 제외

#### (3) 퇴직적립금의 관리

- ㅇ 퇴직금지급 사유 발생시에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매 회계연도마다 퇴직금 산정공식에 의한 추가 소요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ㅇ 전 회계연도까지 누적된 퇴직적립금은 학교장 또는 출납원 명의로 원금이 보장되며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관리 한다
- ㅇ 당해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된 퇴직적립금은 회계연도 말에 지출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하며, 이 경우 퇴직금관리대장을 비 치하여야 하며 교육청에 예·결산 보고 시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 서류와 함께 그 적립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ㅇ 근로자의 요청 시 퇴직연금제도로 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제도 설정 으로 소요되는 학교부담 수수료는 학교회계 비목으로 편성한다.
- ㅇ 퇴직적립금 추가소요액 = 퇴직금 총 소요액 전회계연도까지 누



#### 적된 퇴직적립금

# 라) 학교운영지원비 수당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 수당 지급 기준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운영지원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1) 교원연구비

학교급별	1인당 월지급 한도액		
	교원연구비	학생지도연구비	
고등학교 (위에 준하는 각종학교)	50,000원	10,000원	

#### (2) 제수당

ㅇ 직책수당 : 교원에게는 직책에 따라 다음의 금액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학교급별	교 장	교 감	부장교사	비 고
고등학교 (위에 준하는 각종학교)	30,000원	20,000원	10,000원	

ㅇ 관리수당 및 출납수당 : 일반직원에게는 다음의 금액 범위 내에서 관리수당 및 출납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출납수당은 직접 세입·세출을 담당하는 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관 리	출 납 수 당		
학교급별	일반직(기능직 포함)	학부모회직원 (호봉제 직원)	행정실장	일반직원
고등학교 (위에 준하는 각종학교)	50,000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의금액 지급	20,000원	10,000원

○ 겸직수당 : 주·야간 겸직(중·고 겸직 제외)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 범위 내에서 겸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산업체 야간 특별학급은 제외한다.

학교급별	교	장	행정실장	기타직원
고등학교 (위에 준하는 각종학교)	30,000	)원	25,000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의금액 지급



# (3) 연구비 및 제수당 지급 방법

징계처분, 신분변동 등에 의한 교원연구비 및 학생지도연구비, 제수당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및 공무 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액 지급한다.

- ㅇ 파면, 해임, 면직, 퇴직, 복직, 전보 및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규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발령일(처분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ㅇ 강등, 정직, 직위해제,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또는 파견으로 당해 학교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 중의 교원연구비, 학생지도연구비, 제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5 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ㅇ 감봉처분을 받은 교직원의 감봉기간 중의 연구비 및 제수당은 국가 공무원법 제80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고, 정직 또는 강등처분을 받은 교직원은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 ㅇ 타 기관으로 파견된 자의 연구비 및 제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
- ㅇ 기간제 교원에 대한 연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규교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겸무교원에 대한 교원연구비는 원 소속 기관에서 지급하되, 중·고등 학교 겪무교원은 고등학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4) 중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수당 지급 보류

-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결정【2010헌바220(2012. 8. 23.)】 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 재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짐으로 관련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개정 시까지 학교운영지 원비 수당 지급을 보류 한다.
- ㅇ 특수학교의 경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 무교육의 비용 등)에 의거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않고 있어 학교운영지원비 수당 지급의 근거가 없으므로 관련규정 개정 시까지 학교운영지원비 수당 지급을 보류 한다.



# 2) 운영비

#### 가) 학교운영비

#### (1) 일반운영비

-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연료비, 기타공공요금, 급식용식재료비, 우유대금, 여비,맞춤형 복지비, 교직원복지비로 구 분
- 공공요금은 각급학교의 실정에 맞게 에너지절약 계획 등을 수립·시행 하여 경직성 경비의 절감에 적극 노력한다.
- ㅇ 피복구입비, 침구구입비, 세탁비 등
  - 2006년 경상북도교육감-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제35조[공무원 피복] 교육감은 학교 실정에 따라 아래 직원에 대하여 교단지원에 필요한 피복비가 학교회계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방호원, 사무원(외근) 및 조무원, 운전원: 작업복
  - 위생원: 위생복

#### ㅇ 특근매식비

- 2006년 경상북도교육감-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제15조[기능직 공무원 처우 개선] 학교통학차량 운전원의 조기 출 근에 따른 시간외 근무시 특근매식비를 지출한다.
  -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법인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에 카드 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영수증 카드로 등록한 후 사업자에게 현금 영수증으로 증빙하여 집행(현금영수증 의무적 적용), 운전원 개인에게 지급 불가



#### (2) 교육운영비

- 교육운영비 : 교구·기자재구입(자산성 물품은 비품구입비 목에 편 성) 및 유지보수비, 교육용 재료비, 교육활동숙박비, 식비, 차량임차 료. 교통비, 학생여비, 학교행사비, 학생대회출전비, 도서관운영비, 학급교육활동경비 등
- ㅇ 학습준비물 : 학습준비물 구입비
- ㅇ 학생복지비 : 저소득층학생지원비, 급식지원비 등의 지원금 및 장학 금, 동아리 지원비, 학생자치활동, 학생안전공제회비, 학생보건검사 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 (3) 법정부담금

ㅇ 기타직법정부담금, 기간제법정부담금 등이 해당

# 나) 업무추진비

## (1) 일반업무추진비

- ㅇ 일반업무추진비 구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등 학교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서 편성한도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계상한다.
- ㅇ 일반업무추진비 편성 한도

구분	6학급 이하	7~12학급	13~18학급	19~24학급	25~30학급	31~36학급	37학급 이상
교당	2,000,000원	2,200,000원	2,400,000원	2,600,000원	2,800,000원	3,000,000원	3,200,000원
학급당	60,000원						
교직원 당	36,000원						

- ※ 1. 병설학교의 경우는 학교별로 별도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병설유치원, 방송통신고 및 분교장은 교당 제외, 학급당, 교직원 1인당은 계상)
  - 2. 교직원수에는 학교회계직원(상시근로자)을 포함한다.
  - 3. 위의 기준에서 목적사업비의 업무추진비는 제외 한다.



## ㅇ 일반업무추진비 편성 기준

Ξ	구 분	편 성 기 준	비고
일반	기관운영	기관운영경비, 교직원협의회경비, 학부모협의회경비,	편성기준의
업무	업무추진비	학교운영위원회경비, 기관장격려비, 기관장 경조사비 등	범위 내에서
추진비	사업추진	사업추진경비, 외빈초청경비, 교직원행사경비, 학부모행사경비, 학교운영위원회행사경비, 사업추진격려비,	최소한으로
	업무추진비	사업추진경조사비, 사업추진 각종회비 등	계상

## (2) 직책급업무추진비

- ㅇ 직책급업무추진비란 :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 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 刊
- ㅇ 편성 한도 및 기준

지급대상	지급액	가산금	비고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장	월 250,000원	12학급기준으로 1학급 초과 시 마다 3,000원 가산	통합·병설학교의 겸임 학교장에게는 지급액(가산금제외)의 반액 추가지급

- ※ 1. 가산금: 각급 학교의 학급가산금은 병설유치원 학급, 특수학급, 방송통신고 학급 및 분교장 학급을 포함하여 산정함
  - 2. 집행 범위
    - 기관 간 섭외, 내부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수행 의 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경비
    - 1개월 이상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 불가
      - (3) 업무추진비 집행시 유의 사항[감사관 자료실 "일반 업무추진비 집행 시 준수사항 알림"숙지 철저]
        - ㅇ 업무추진비(기관운영/사업추진)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에게 월정 액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사적인 경조비, 전별금, 학교장 · 교직원 등이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 등을 업무추진비에서 지출 할 수 없다.



- ㅇ 교직원의 퇴임행사 관련 경비는 간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소한 의 경비만 계상하고 전별금, 위로금, 기념품, 선물비용 등을 지출할 수 없다.
- ㅇ 소속교직원의 경조사비는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지급액과 지급범위를 학교장이 자율 결정하며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한다.
- ㅇ 업무추진비(기관운영/사업추진)의 지출은 교직원의 경조사비 지급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경조사비 지급범위는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며,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경조사비 관련 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 경상북도교육청 공 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3) 자산취득비

#### 가) 시설비

- ㅇ 시설비: 학교의 시설에 필요한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 ㅇ 임차보증금: 원어민교사 주택 등 향후 회수할 임차 보증금

#### 나) 비품구입비

- ㅇ 비품구입비: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물품 구입비
- o 도서구입비: 도서관, 학급문고 등 도서구입비(기본운영비의 3%이상 편성 권장)

#### 다) 적립금

○ 노후교실의 증·개축, 잔디운동장 전면보수, 수영장 전면보수 등 대규모 사업을 위한 적립금

#### 라) 기타자산취득비

○ 수목, 소프트웨어 구입 및 기타유·무형자산 등 구입비

#### 4) 예비비 및 기타

#### 가)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으며, 업무추진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예비비로는 계상할 수 없다.
- 연도 중에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결산서 제출 시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나) 반환금 : 국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등 집행 잔액 반환금
- 다) 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 또는 타학교회계 등으로 전출하는 자금
- ※ 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별첨] 2014학년도 공립학교 학교회계 예산과목 체계 및 과목 내용에 따른다.

# Ⅶ. 행정사항

- 1. 학교회계의 재정건전성 유지 및 학교재정운영의 공개
  - □ 각급 학교의 세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교육계획 등과 연계한 세출예산의 편성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학교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학교의 사업은 당해연도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고, 당해 연도 세출예산은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계연도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경우 이월 처리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으로 불용액 현황 집중점검 실시
    - 특별한 사유없이 불용액 과다 발생 학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학교운 영비를 감액 교부 예정
  - □ 목적사업비 중 목적을 달성한 후의 집행잔액은 반납하되 100만원 미만의 집 행잔액은 반납하지 않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특별교육재정수요지 원 또는 사업부서에서 반납을 요구한 목적사업비는 제외 한다.
    - 목적사업비 집행잔액을 사용할 경우는 재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내부결재를 득한 후 집행한다.
      - ※ 집행 잔액에 대한 본래의 사업목적, 당초 교부액 목적달성 여부 및 집행 잔액 발생원인 등을 기재



□ 학교의 예산 및 결산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가정통신문 발송, 연중 학교홈페이지에 탑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교직원. 학부모 등에게 공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학교회계 사고 예방

【관련근거: 학교회계 사고 예방대책 검토서 통보(감사공보담당관-2393, 2009.04.30.)】

#### 가. 학교 명의의 통장관리 철저

- □ 각급 학교 회계의 통장 인감을 2개 이상으로 관리
  - 출납원 직·사인을 공동으로 인감 등록하고 출납원 직인, 출납원 사인, 통장을 각각 분리하여 보관
  - 기업, 협회,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장학금 등)은 학교발전기금으 로 처리
- □ 통장관리 및 회계사고 예방차원에서 학교에서 관리하는 예금계좌(통장) 수를 최소화

## 나. UMS(입출금 알림 서비스) 실시

■ 학교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자금 입·출금 시 금융기관에서 행정실장 또는 학교장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자동 송출토록 조치

## 다. 학교 자체 점검 강화

- □ 매월 1회 회계장부와 통장 잔액의 일치 여부 확인
  - 형식적인 결재가 아닌 통장거래내역과 지출내역을 대조
- □ 회계관계직원 인사이동 시 사무인계인수 철저
- □ 각종 제세공과금의 청구내역과 납부 상태를 확인
  - 납부 영수증 및 자동이체 납부상태 대조
- □ 수익자 부담경비의 세입금 수납 시 스쿨뱅킹 등 전산수납제도를 적극 활용 하고 현금 수납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 □ 비정규직에 대한 지도·관리 강화 및 회계직원 교육 실시



- □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재정보증가입 의무화 및 가입 대상자 확대
  -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가입 한도액 상향 조정

## 3.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이용

- □ 학교회계는 에듀파인시스템으로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 에듀파인 시스템으로 출력한 자료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동자료가 입력된 전산자료 저장매체는 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 까지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 □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관련 문의 안내(중앙콜센터 통합관리)
  - 중앙콜센터(고객만족센터, 09:00~18:00): 1544-0079
  - 관련사이트: help.edufine.go.kr

# 4. 학교회계 예산 및 결산

- □ 단위학교별 연수 실시
  - 각급 학교에서는 소속 교직원, 학생,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을 대상으로 학교회계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예산요구서를 제출 받아 학교회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 □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준수
  - 1) 산출기초는 사업별로 구분 작성하되, 구체적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산출기초 없이 총액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한다.
    - ▶산출기초: (단가)원× 물량(명, 개 등)× 회수(월, 일, 회 등) =
  - 2) 금액단위는 천원으로 하되 산출기초에는 원 단위로 계상한다.
    - ▶ 세입예산의 1,000원 미만은 절사하고 세출예산의 1,000원 미만은 절상 한다.
    - ▶다만,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액이 일치되도록 "절상"으로 조정 하여 편성한다.
  - 3) 지급 근거 없는 수당 편성 금지(여비 등 실비 보상적 경비와 이중 계상 금지)
- □ 도교육청에서는 매년 각급 학교에 대한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재정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여 홈페이지에 공개(경상북도교육청 기획조정관 자료실)



- □ 지역교육청에서는 사이버감사 권한을 부여받아 정기적으로 관할 학교의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확인ㆍ점검
- □ 각종 장부. 서식 등은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예·결산서 제출
- 확정된 예·결산은 서식[별첨]에 의거 첨부서류를 갖추어 기일 내에 제출

## 《 학교회계 예·결산 보고 사항 》

구	분	보고일자	제 출 서 류	비고
예산	고등학교 특수학교	2014. 3. 22 까지	<ul><li>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예산현황을 도교육청으로 보고</li><li>제출서류는 별도 공문시달</li></ul>	
보고 (2014 학년도)	학교	2014. 3. 22 까지 (2014.3.29)	<ul> <li>유·초·중학교는 예산현황을 지역교육청으로 보고</li> <li>지역교육청은 유·초·중학교 예산현황을수합 후 도교육청으로 보고</li> <li>제출서류는 별도 공문시달</li> </ul>	예산·결산보고: 중·고병설(통합) 학교의 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등
결산	고등학교 특수학교	2014. 4. 5. 까지	<ul><li>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결산현황을 도교육청으로 보고</li><li>제출서류는 별도 공문시달</li></ul>	학교는 도교육청 으로 보고한다. (추경예산은 보고
보고 (2013 학년도)	유·초·중 학교 (지역교육청)	2014. 4. 5. 까지 (2014.4.12)	<ul> <li>유·초·중학교는 결산현황을 지역교육청으로 보고</li> <li>지역교육청은 유·초·중학교 결산현황을수합 후 도교육청으로 보고</li> <li>제출서류는 별도 공문시달</li> </ul>	생략)

※ 지역교육청에서는 관할 유·초·중학교 학교회계 예·결산서를 검토 분 석하여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고, 해당 학교에서는 시정 또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5. 기타사항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교 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 및 기준 등 회계관계 제규정을 준용한다.

# 2014학년도 공립학교 학교회계 예산과목 체계 및 과목 내용



# 1. 공립 학교회계 세입예산 과목 구분

장 괸	항	목	원가통계비목	과목해설
1.이전	!수인			
1.	중앙	정부이전수입		
	1.Ξ	국고보조금		
		1.국고보조금	1.국고보조금	중앙정부에서 교부하는 국고보조금
2.2	지방			
	1.8	법정이전수입		
		1.광역지방자치단체전입금	1.광역급식비보조금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급식경비(식품비, 연료비, 인건비 등)
			2.광역급식시설. 설비사업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 호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급식 시설.설비사업 경비
			3.광역교육정보화사업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 호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경비
			4.광역교육시설(환경) 개선사업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 의2호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교 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경비
		Ę	5.광역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사업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 호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경비
			6.광역주민교육과정 개발운영사업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경비
	8.3	7.광역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호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경비	
			8.기타광역지방자치 단체보조금	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사업 경비
	2.기초지방자치단체전입금		1.급식비보조금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급식경비(식품비, 연료비, 인건비 등)
			2.급식시설.설비사업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 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급식 시설.설비사업 경비
			3.교육정보화사업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 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경비
			4.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 의2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교 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경비
			5.학교교육과정운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



장 전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과목해설
				지원사업보조금	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교육과정
				N E N G T T E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경비
				6.주민교육과정개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
				운영사업보조금	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주민을
				COMBILLO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경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
				7.체육문화공간설치	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교육과
				사업보조금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
					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경비
				8.기타지방자치단체	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
				보조금	는 사업 경비
3	B. 교	9	비특별회계이전수입		
		1.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수입		
			1.학교회계전입금	1.학교운영비전입금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을 위하여 목적없이 총액으로 교 부되는 전입금
			1. 124/1100	2.목적사업비전입금	학교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되는 전입금
4	.기	타	이전수입		
	1	2.₫	 학교회계간이전수입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학교발전기금
			1.학교발전기금전입금	1.학교발전기금전입금	전입금
			2.다른학교회계전입금	1.다른학교회계전입금	같은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가 전출하는 전입금(비조리교가 조리교로 납부하는 급식비 등)
					같은 학교내 학교기업회계가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힉
					교기업회계전입금 또는 위 항목 이외의 같은 학교나
			3.기타학교회계전입금	1.기타학교회계전입금	교기합의계선합음 오는 뒤 항목 이피의 끝든 목교다 타 회계에서 이전되는 학교내타회계전입금(같은학교 서
			0.기딕교회개단답답	1.74 - #3/1066	입세출외현금 등)(단, 세입세출외현금 이자는 이자수입
					에 편성)
	:	3.0	 U간이전수입	I	<u> </u>
	-	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기관(공공의 성격
					이 있는 기관)등이 지원하는 지원금
			1.기타지원금	1.기타지원금	다, 기업, 협회,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학교
					발전기금으로 처리
사	 체 <i>=</i>	수잍	<u> </u>	I	
Ť					
1	.악	「누. ——	모부담수입 		
		1.5	등록금		
				. = = = = = = = = = = = = = = = = = =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지원(육성)을 위
			3.학교운영지원비	1.학교운영지원비	해 징수하는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0 4			(초등학교, 중학교는 해당없음)
	- 1	2.4	누익자부담수입 	4 7 41111	
			1.급식비	1.급식비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비(인건비, 식품비, 관리비 등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과목해설			
				포함)와 우유대금, 교직원 급식비(직영급식에 한함) 등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			
		2.방과후학교활동비	1.방과후학교활동비	방과후 또는 토요,방학중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수익자 부담금			
	2.방과후학교활동비 3.현장체험학습비 4.청소년단체활동비		1.현장체험학습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소풍, 견학 등) 및 수련활동(극기훈련, 야영수련, 학년별 수련, 임원수련 등)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각종 청소년 단체 활동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5.졸업앨범대금 1.졸업앨범대금		1.졸업앨범대금	졸업앨범 제작.구매하기 위한 수익자 부담금			
		6.교과서대금       1.교과서대금         7.기숙사비       1.기숙사비		교과서 구입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기숙사 생활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8.기타수익자부담수입 1.기타수익자부담수입		1.기타수익자부담수입	기타 교육활동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			
		9.누리과정비	1.누리과정비	유치원 누리과정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2.지원금수입							
	1.₫	 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1.급식지원금수입	1.급식지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급식비 지원금			
		2.방과후학교활동지원금	1.방과후학교활동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방과후			
		수입	지원금수입	학교활동비 지원금			
		3.기타학부모부담지원금	1.기타학부모부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급식비			
		수입	지원금수입	및 방과후학교활동비 이외의 학부모부담 지원금			
		4.학교운영지원비지원금수	1.학교운영지원비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학교운			
		입	금수입	영지원비 지원금			
		5.현장체험학습지원금수입	1.현장체험학습지원금 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현장체 험학습 지원금			
		6.청소년단체활동지원금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청소년			
		입	금수입	단체활동 지원금			
		7.졸업앨범대금지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졸업앨 범대금 지원금			
		8.교과서대금지원금수입	1.교과서대금지원금수 입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교과서 대금 지원금			
		9.기숙사지원금수입	1.기숙사지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기숙사 지원금			
		10.누리과정지원	1.누리과정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유치원 누리 과정 지원금			
_	해정	<sup></sup> 활동수입					
3.5	50	1.사용료및수수료					
3.5		사용료및수수료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과목해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득한 자로부터 수수하는								
					사용료와 학교물품의 대여로 발생하는 대여료 등 제증명 발급, 수험료, 행정정보 공개, 입찰참가신청								
				2.수수료	등 조례 및 규칙 등에서 정한 수수료를 학교에서 수납								
					하는 수수료								
		2.7	다산수입										
			1.자산매각대	1.자산매각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사무기기, 도서 등 자산매각 수입								
		3.4	덕립금처분수입 										
			1.적립금처분수입	1.적립금처분수입	노후교실의 증.개축, 잔디운동장 전면보수, 수영장 전면보수 등 대규모 사업을 위한 적립금 처분 수입(적립금 이자 수입 포함)								
		4.보증금회수											
			1.보증금회수	1.보증금회수	원어민교사 주택 임차보증금 등 보증금 회수 수입								
	5.기타행정활동수입												
					지난년도 징수결정 하였으나 미수납된 금액을 당해연								
			1.지난년도수입	1.지난년도수입	도에 수납하는 행정활동 수입 (학부모부담수입은 해당과목에 계상)								
			2.이자수입	1.이자수입	학교회계, 세입세출외현금 등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								
			3.기타행정활동수입	1.기타행정활동수입	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의 행정활동 수입								
3.5	기타	수인											
	1.2	던년	도이월금										
		1. €	E세계잉여금										
			1.순세계잉여금	1.순세계잉여금	전년도 학교회계에서 발생하는 불용액(추계)으로 당해 연도에 이월되는 순세계 잉여금								
	2.보조금사용잔액												
			1.보조금사용잔액	1.보조금사용잔액	전년도 국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학교법인 목적사업비 등 사용잔액으로 반납하여야 할 금액								
		3.0	비월금										
			1.이월사업비	1.이월사업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 2. 공립 학교회계 사업별 세출예산 과목 구분

정책 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명 (권장)	사업 해설	세부항목 예시 비고					
인적자	원 운용		교직원 보수 등 인적자원 운용 제 사업비						
		교직원대체 인건비	출산휴가, 장기병가 등 정규직 교직원(상 용직 학교회계직원 포함)을 대체하는 기 간제 교원, 행정대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간제교원인건비 행정대체인력인건비					
	교직원 기타보수	학교운영지 원비수당	학교운영지원비를 재원으로 하는 학교에 서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교원연구비, 직책수 당, 관리수당, 출납수당 등 학교운영지원 비 재원 수당	교원 행정직원 학교회계직원					
		교직원연수	교직원(학교회계직원 포함)의 교수 및 직 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 사업비	직무연수 자격연수 정보화연수 자율연수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교직원복지	교원, 행정직원, 학교회계직원(비상용직 포함)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비	이전비 동호회지원 퇴임식행사 교직원체육행사 교직원문화행사 교직원포상					
		맞춤형복지	교원, 행정직원, 학교회계직원(비상용직 포함)에 대한 맞춤형복지비	교원맞춤형복지비 직원맞춤형복지비 학교회계직원맞춤형복지비					
학생복	지/ 교육격치	나 해소	학생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제 사업비						
	급식 관리	학교급식 운영	학교급식소(실) 운영, 우유 유.무상 공급 비 등 학교 급식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영양사, 조리종사원 등 급식 관련 학교회 계직원 인건비	영양사인건비 조리사인건비 조리원인건비 급식재료구입비 급식운영비 급식기구확충비					
		위탁급식 운영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제 사업비	위탁급식비					
	기숙사 관리	기숙사운영	기숙사 운영 제 사업비	기숙사운영비					
		학생안전 관리	학생 치료 등 학생 안전관리 관련 제 사업비	학교안전공제회비 응급학생후송비					
	보건관리	학생건강 관리	학생 건강진단 등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관련 제 사업비	학생건강검사 교의수당 먹는물관리					
		학교환경 위생관리	학교 학습환경, 시설 등 제반 환경위생 관 련 제 사업비						



정책 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명 (권장)	사업 해설	세부항목 예시	비고		
		보건실운영	약품 구입 등 보건실 운영 제 사업비	약품구입 보건실일반운영			
		학비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비	저소득층자녀학비지운 특수교육대상자학비자	_		
	교육격차해소	급식비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급식비 지원비	무상급식 저소득층자녀급식비지 특수교육대상자급식비 기타급식비지원	. —		
		방과후학교 교육비지원 현장체험학 습지원 청소년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방과후학교활동비 지원비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현장체험학습 지원비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자녀방과후학 특수교육대상자방과학 저소득층자녀현장체험 특수교육대상자현장치 저소득층자녀청소년(5	한학교교육비지원 범학습지원 베험학습지원		
		환도지원활동지원졸업앨범대금지원	학생 청소년단체활동 지원비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졸업앨범대금 지원비	지소득증자더성요인전 특수교육대상자청소년 저소득층자녀졸업앨범 특수교육대상자졸업일	년단체활동지원 범대금지원		
		교과서대금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교과서대금 지원비	저소득층자녀교과서다			
		기숙사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기숙사 지원비	특수교육대상자교과서대금지원 저소득층자녀기숙사지원 특수교육대상자기숙사지원			
		정보화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통신비 지원비	저소득층자녀인터넷통 컴퓨터구입비지원	통신비지원		
		누리과정지 원	유치원 누리과정 전면시행에 따른 제 지원 비				
		기타교육 격차해소	위에 나열한 것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부모부담지원금	기타교육격차해소			
	학생 장학 지원	학생장학금 지원	내/외부 학생 장학금 지원 제 사업비	학생장학금지원			
		졸업앨범 제작	졸업앨범 제작 제 사업비	졸업앨범제작			
	기타 학생복리 서비스	학생교과서 구입	학생교과서 구입 제 사업비	학생교과서구입	교사용 교과서 (지도서) 구입은 [단위사업:교과 활동]에 편성		
		기타학생 복지	교복 물려주기, 통학차량운영지원, 학교 매점 관리, 학생증 제작 등 기타 학생복지 를 위한 제 사업비	학생증제작 통학차량운영지원			
기본적	교육활동		표준 교수학습 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제 <i>기</i>	사업비			
	교과 활동	기본교수 학습활동 지원	단위학교가 표준 교육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교육과정에 명시된 모든 교과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구, 설비와 재료를 구입하고 유지, 관리하는 제 사	[보결(대상)수업관리			



정책 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명 (권장)	사업 해설	세부항목 예시	비고					
		(_0,	업비							
		국어 교과활동	국어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인턴교사제운영						
		사회 (역사,도덕) 교과활동	사회(역사,도덕)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 는 제 활동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인턴교사제운영						
		수학 교과활동	수학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인턴교사제운영						
		과학 (실과,기술, 가정) 교과활동	과학(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운영에 소 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교과운영 과학의달 행학습준비물지원 전비는 [단역인턴교사제운영 업:창의적체과학실험보조원인건비 동]에 편성						
		체육 교과활동	체육교구 구입 등 체육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인턴교사제운영	학생체육대회비, 소년체육대회출 전비는 [단위사 업:창의적체험활 동]에 편성					
		예술 (음악,미술) 교과활동	악기수리비 등 예술(음악,미술)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인턴교사제운영						
		외국어 (영어,제2외 국어) 교과활동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 동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원어민보조교사인건비 외국어강사 인턴교사제운영						
		특수교육 교과활동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특수교육보조원인건비 인턴교사제운영						
		진로교육 교과활동	진로 관련 교육 교과과정 운영에 소요되 는 제 활동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인턴교사제운영						
		학력신장	보충과정 운영, 기초학력지도, 수준별이동 수업 등 학력신장에 투입되는 제 사업비	보충과정운영 기초학력지도 수준별이동수업						
		전문 교과활동	기계, 전자, 자동차, 토목, 원예 등 특성화고 전문 교과활동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기타 교과활동	기타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 교내 교과협 의회 운영 등 기타 교수학습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제 사업비	교과운영 교과협의회운영						
	창의적 체	자율활동	적응, 자치, 행사 및 창의적 특색 활동에	입학식, 졸업식, 학생	회활동지원					



정책 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명 (권장)	사업 해설	세부항목 예시 비고					
			소요되는 제 사업비	학예회, 과학경연대회, 실기대회 학생건강체력평가, 체육대회 수련활동, 현장학습, 수학여행					
		현장체험학 습활동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활동 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수학여행 수련활동 현장학습					
	헌활동	동아리활동	학술, 문화예술, 스포츠, 실습노작 및 청 소년단체 활동,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소 요되는 제 사업비	동아리활동 청소년단체활동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봉사활동	교내봉사, 지역사회봉사, 자연환경보호 및 캠페인 활동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장애학생돕기, 다문화가정학생돕기 고아원봉사, 양로원봉사 자연보호활동, 식목활동					
		진로활동	상담 및 진로체험 활동에 소요되는 제 사	자기이해활동 진로계획활동 진로체험활동					
선택적	교육활동		표준교육활동이 아닌 선택적 교육활동에 설	L요되는 제 사업비					
	방과후학 교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		학부모코디네이터운영					
		기타방과후 학교운영	방과후 보육교실, 돌봄교실 운영, 토요스 포츠강사 운영 등 제 사업비	방과후학교보육교실운영 종일돌봄교실운영 토요스포츠활동					
	평생교육	평생교육 운영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컴퓨 터, 체육 등 평생교육 제 사업비	평생교육운영					
	직업교육	직업교육 운영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선택적 직업교육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직업교육운영 산학협력연계교육					
	국제교육	국제교육 운영	외국학교와의 국제교류 등 국제교육 관련 제 사업비	자매결연학교교류					
	독서활동	독서활동 운영	도서구입, 도서관운영, 교원독서교육역량 강화 등 독서 활성화를 위한 제 사업비	교원독서교육역량강화 도서구입 도서관운영 사서보조원인건비					
	교기육성	운동부운영	축구, 야구, 육상, 수영 등 전문적 운동부 운영 및 육성 등 제 사업비	축구부운영 육상부운영 수영부운영					
		기악부운영	전문적 기악부 운영 및 육성 등 제 사업비	기악부운영					
	기타 선택적	영재교육 운영	영재교육운영 등 위에 제시하지 않은 선 택적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영재교육운영 학학협력연계교육 영재캠프					
	교육활동	기타선택적 교육운영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등 학생의 학원위탁 교육비 등 외부기관 및 시설로 학교교육을	위탁교육					



정책	단위사업	세부사업명	사업 해설	세부항목 예시 비고					
사업		(권장)	일부 위탁한 경우 소요되는 제 사업비 등						
교육활동	 통 지원		교수학습 간접 교육비로 교육활동 지원 제	사업비					
- '-			교수학습에 직접 투입되지 않으나 교육활						
		교무학사	교구역급에 역접 구립되지 않으나 교육될 동 지원을 위한 제 사업비로 출석부 구입.						
		교구특시 운영	교내외 학생생활지도 등 교무학사 운영을						
	교무업무	EG	교내되 역정정철시도 중 교수역사 군정철 위한 사업비	교육철등등도 입학식 및 졸업식					
	운영		학생 평가 소요 제 사업비, 학부모 시험감						
		교육과정	독 운영 제 사업비, 학생 평가 협의회 운	교육과정평가					
		평가	영 제 사업비 등 교수학습 간접비	학부모시험감독운영					
				학생생활지도외부강사수당					
				생활지도여비					
				생활지도실운영					
			생활지도여비, 상담봉사자회비, 학교지킴	생활지도봉사자회비					
			이, 녹색어머니회등 교내외 학생생활지도	학교지킴이					
	생활지도	생활지도	에 소요되는 제 경비	녹색어머니회					
	운영	운영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맞춤형 대응, 피	체험.공감형예방교육					
			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학교역량	피해학생지원					
			제고 및 관리 감독 강화 등 학교폭력대책	가해학생선도					
			에 소요되는 제 경비	학교폭력관련연수지원					
				· · · · · · · · · · · · · · · · · · ·					
				학교폭력맞춤형대응					
	01 7 = 1 7	01 7 = 1 7		교과부지정					
	연구학교	연구학교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 제	시도교육청지정					
	운영	운영	사업비	지역교육청지정					
		방송실운영	    방송장비 구입 등 방송실 운영 제 사업비	방송장비구입					
		00570	0000110000200117101	방송실운영					
			상담실운영 제 사업비	상담실운영비					
	-L A TLO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학교상담실	상담요원인건비					
	학습지원	운영	(Wee클래스) 등 운영 제 사업비	학교부적응학생진단,상담,치유 프로그					
	실 운영	TJ 니 크 I I	-진로진학상담실 등 운영 제 사업비	램 운영비					
		정보화실 운영	정보화실 운영 제 사업비	학교정보화지원 전산보조원인건비					
		공동실습소		선선모소련인신미					
		운영	공동실습소 운영 제 사업비	공동실습소운영비					
				책.걸상구입					
	교육여건	교육환경	교수학습 및 학교행정을 위한 시설.장비의	칠판교체					
	개선	개선	개선을 위한 사업비	PC구입					
				소규모수선					
학교 일	반운영		학교 기관 및 부서 운영을 위한 제 사업비						
		부서	교장실, 행정실, 교무 각 부서의 기본 운	교장실 및 행정실운영					
	부서 기본	기본운영	영을 위한 제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무서 기관 운영	/1亡で3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	교무부, 연구부, 학생부운영					
	0	방송통신고	방송통신고등학교 기본 운영을 위한 제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					
		등학교운영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정책 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명 (권장)	사업 해설	세부항목 예시	비고			
.,,		(20)	등을 계상					
	시설 장비 유지	학교시설장 비유지	전기/수도/통신 시설 등 학교시설 유지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용역비 등 기본적 경비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제 사업비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관리용역 시설일반관리 화장실관리 체육관관리 당직관리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대규모 수선비 및 시설 사업비는 [단위 사업:시설확충및 개선]에 편성			
	일반행정	행정지원 인력운용	행정(사무)실무원(구 육성회직 포함) 인건비,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행정지원을 위한 인력 제 사업비	행정실무원인건비 공익근무요원인건비				
	관리	일반행정 사무관리	학교 사무용품 구입, 사무용기기 구입 및 수리 등 일반행정 사무관리를 위한 제 사 업비	사무용품구입 업무용도서구입 간행물구독 사무용기기관리				
	학교운영	학교운영 위원회운영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 사업비	학교운영위원회운영				
	협력	유관기관 협력	유관기관 협력을 위한 제 사업비	지역발전협의회운영 관내기관체육대회				
	학부모 지원	학부모지원	학부모 학교참여를 위한 학부모회 지원 및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등 학부모지원 제 사업비	학부모회운영 학부모교육 학부모시험감독운영				
학교시	설 확충		대규모 수선비, 교실 증·개축 등 시설 사업	Ы				
	시설확충 및 개선	시설확충 및 개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입찰(2인 이상 견적서 제출 포함)을 하는 경우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로 호우피해 복구공사, 교실 개축 등 학교시설 확충 및 개선	교실증개축 조경공사 교사동방수공사				
학교 자	무활동		목적사업비 반환 및 예비비 관리 등 비사업	업성 재무활동				
	반환금	반환금	전년 목적사업비 등 집행 잔액 반환	반환금				
	예비비	예비비	वामाम					



# 3. 공립 학교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과목 구분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비목	과목해설				
1.인건년	]							
	1.인건	HI.						
		2.기타직보수	1.계약직교원인건비	기간제교사, 시간 및 전임강사 인건비(퇴직급여포함) 인턴교사,전문상담교사,원어민(보조)교사 등				
		2.713 12 1	2.학교직원인건비	공무원(정규직 교직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정규직 인건비(상용근로자)(퇴직급여포함)				
		3.기간제근로자보수	1.기간제근로자인건비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인부임(일용 근로자)(퇴직급여포함)				
		4.학교운영지원비 수당	1.학교운영지원비수당	교직원(교원, 직원, 학교회계직원)에게 지급하는 교원 연구비, 직책수당, 관리수당 등 학교운영지원비를 재 원으로 하는 수당				
2.운영년	<del> </del>							
	1.학교	!운영비						
			1.일반수용비	사무용품비, 급식소모품비, 일반인쇄비, 시설장비유지비, 청소용역비, 시설장비위탁용역비, 수수료, 임차료등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 교육경비 등				
			2.운영수당	당직비, 강사수당, 수업보결수당, 방과후학교강사료, 보충수업·방과후학교업무(수납,지출,인쇄)수당, 교의수 당 등 운영수당, 배움터지킴이활동비				
			3.전기요금	전기요금				
			4.상하수도료	상하수도료				
			5.연료비	도시가스료, 지역난방료, 냉난방기연료비, 취사용기연료비, 차량유류대 등 에너지 사용에 소요되는 경비				
		1.일반운영비	6.기타공공요금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료를 제외한 우편요금, 전화요 금, 인터넷통신요금,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 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7.급식용식재료비	급식에 소요되는 식재료비				
			8.우유대금	급식용우유대금				
			9.여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 이전비 및 민간인.학생 여비				
			10.맞춤형복지비	교직원(교원, 직원, 학교회계직원) 맞춤형복지비				
			11.교직원복지비	교직원 맞춤형복지비는 제외한 피복비, 특근매식비, 영유아보육수당, 순회교사및복식수업수당 등 교직원 지비				
		2.교육운영비	1.교육운영비	교구·기자재구입(자산성 물품은 비품구입비 목에 편성) 및 유지보수비, 교육용 재료비, 교육활동숙박비·식비·차 량임차료·교통비, 학생여비, 학교행사비, 학생대회출전 비, 도서관운영비, 학급교육활동경비 등				
			2.학습준비물	학습준비물 구입비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비목	과목해설						
			3.학생복지비	저소득층학생지원비, 급식지원비 등의 지원금 및 장학금, 동아리지원비, 학생자치활동, 학생안전공제회비, 학생보건검사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3.법정부담금	1.기타직법정부담금	계약직교원 및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 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기관(학교)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2.기간제법정부담금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기관(학교)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2.업무	<sup>1</sup> 추진비								
			1.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1.일반업무추진비	2.직책급업무추진비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3.자산추	부득비									
	1.시설	! HI								
		1.시설비	1.시설비	학교의 시설에 필요한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 대비 등						
			2.임차보증금	원어민교사 주택 등 향후 회수할 임차 보증금						
	2.비품	구입비								
		4 111 77 701111	1.비품구입비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물품 구입비						
		1.비품구입비	2.도서구입비	도서관, 학급문고 등 도서구입비						
	3.적립	급								
		1.적립금	1.적립금	노후교실의 증·개축, 잔디운동장 전면보수, 수영장 전면보수 등 대규모 사업을 위한 적립금						
	4.기티	자산취득비								
		1.기타자산취득비	1.기타자산취득비	수목구입, 소프트웨어구입, 기타 유.무형자산 등 기타 자산 취득						
4.예비										
	1.예비비및기타									
		1.예비비	1.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2.반환금	1.반환금	국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학교법인 목적사 업비 등 집행잔액 반환금						
		3.전출금	1.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 또는 타학교회계 등으로 전출하는 자금						

# 2014학년도 공립학교 학교회계 예·결산서 및 현황 서식



# <서식 1>

# 학교 현황

1. 학급 및 학생수 현황 (3. 1현재)

학년별	-	1	2	),	3	3	 7.	비고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11.12

<sup>※</sup> 병설(통합)학교는 구분하여 작성

# 2. 교직원 현황

		교 원						일반직 등			학교회계직원										
분	교 장	교 감	보직교사	교 사	기 간 제 교 사	소계	일반직	기능직	소계	행정실무원	교무행정사(교무)	영양사	조리 사	조리원	교무행정사(전산)	교무행정사(과학)	승차보조	야간경비	기 타	소계	합계
정원																					
현원																					

※ 수익자 부담경비의 예산으로 채용한 직원도 포함, 병설(통합)학교는 구분하여 작성



# <서식 2>

# 학교회계 소속 직원 개인별 명단

					월 임	금 내 역			-1-1	
성명	최초 임용일자	근무 연수	계약 형태	본봉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및 직급보조비	계	총 퇴직금	담당 업무	비고
00명	합계									

ㅇ 작성대상 : 학교회계 소속 직원(3월1일 기준)

ㅇ 정액수당 : 연액을 12로 나눈 금액

○ 복리후생비 및 직급보조비 : 연액을 12로 나눈 금액(자녀학비수당, 가족수당 등)

ㅇ 일용직은 연간지급액에서 근무월수를 나눈 금액을 정액수당의 월정에 기재

ㅇ 총퇴직금액 : 당해 학년도 2월말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퇴직금

에서 국민연금 퇴직전환금 기납부액을 공제한 금액

○ 담당업무: 사무,교무,과학실험,전산,조리,야간경비,기능(목공,필경,방호,사송,운전,청소,

기타) 등으로 세분화하여 기재

## <서식 3>

# 학교회계 직원 퇴직금 적립현황

(단위:원)

구분		フ] <sup>조</sup> ( ~20	립현황 11학년도)		201 적	2학년도 립현황	201 예	3학년도 산 액	합계 (A+B+C)	ਸੀ ਹ
직종별	인원	퇴 직 적립금	예금 이자	소계 (A)	인원	적립액 (B)	인원	예산액 (C)	(A+B+C)	비고
계										



# <서식 4>

# 세입ㆍ세출예산 요구서

# ■ 세입예산요구

교감(부장): (인)

작성자: (인)

	과	목		원가		금년예산		전년도	증 감
장	관	कें	목	통계 비목	산출내역	산 출 식(단가× 물량)	요구액 (1)	예산액 (2)	(1-2)
		계							

<sup>※</sup> 목적사업비, 지자체전입금, 수익자부담금 등이 있는 경우

# ■ 세출예산요구

교감(부장): (인)

작성자: (인)

거ᆌ	rl ol	괴ㅂ	세부	원가			금년	예산		전년도	증 감
정책 사업	사업	사업	하목	통계 비목	산출내역	산 출	식(단가×	물량)	요구액(1)	예산액 (2)	· 日 (1-2)
		계									



## <서식 5>

#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예시)

# 예산 총칙

제1조 20○○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원으로 하며 세입·세출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

제2조 20○○학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비 명세서"와 같다.

제3조 20○○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다.

제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목적이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학 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다. 다만, 목적사업비가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 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제5조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경상북도 공립학교회계규칙 제17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1. 교원연구비, 관리 및 직책 수당, 겸직수당
- 2. 학부모회 소속 직원의 인건비
- 3. 각종 공과금
- ※ 명시이월비나 계속비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기록한다.
- ※'가주처리 조항'은 성립전 예산집행의 예외조항인 만큼 반드시 학교회계예산총칙에 위의 조 항을 포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한다.



# ○○학교 세입·세출 예산 총괄

회	계	연도	:

예산구분 : 학 교 명 :

(단위:천원,%)

예산구분	전년이	<b>비산액</b>	예산액	비교증감				
11212	본예산	최종예산	1127	본예산	증감률	률 최종예산 증감		

(단위:천원,%)

	세	입		세출					
장	관	예산액	구성비	정책사업	단위사업	예산액	구성비		



# 세부사업설명서

세부사업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부서	
교육목표			
사업기간	담당자	<b>15</b> °	

□ 사업개요			

## □ 사업목표 (\*자료가 있을 경우만 출력)

사업목표	주기	단위		전년도			당해년	E	다음년도	비고
사람들표	一 十/1	인기	목표	실적	달성율	목표	실적	달성율	목표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 □ 예산현황

1. 예산 현황 (단위:천원,%)

			세출							세우	]			
세부항목	전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율	전년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중감율
	예산액	1 0 -1	7127	1 0-1	증감	0.05	예산액	1 0-1	계	정산	일반	1 0-1	증감	0.05

2. 세출 각목명세서 (단위:천원)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산출내역	전년도예산액	산출식	예산액	비교증감
합 계						

3. 세입 각목명세서 (단위:천원)

목	원가통계비목	산출내역	전년도예산액	산출식	예산액	비교증감
합계						



4. 세입재원 현황 (단위:천원)

구분	계	목적사업비	수익자 부담	법인/타학교 전입금	보조금및 지원금	발전기금	일반
전년도 예산액							
예산액							
비교증감							

5. 성질별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	예비비 및 기타
전년도예산액								
예산액								
비교증감								

6. 물건비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분	계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복리 후생비	직무 수행비	연구 개발비	비고
전년도예산액								
예산액								
비교증감								

# 세입예산 명세서

예산구분 :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전년도	비교증감	산출기초(원)	비고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게단기	예산액	- 日本 6 年	년 출기소(년)	17.
	세입합계								

# 세출예산 명세서

예산구분 : (단위 : 천원)

		入	·업			전년도	비교증		
정책	단위	세부	세부 항목	원가통계비목	예산액	예산액	감	산출기초(원)	비고
	세출합계								



### <서식 6>

# ○○학교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 □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단위 : 천원)

예산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비교

### □ 잉여금 처리상황

(단위 : 천원)

À	세계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순세계 잉역 보조금			그ㅁ	
세입결산	세출결산	차액	명시	사고	계속비	소계	반 환 확정액	결산전 이입	결산후 이월	소계

#### □ 세입•세출 결산내역

	세	입		세출				
장	관	결산액	구성비	정책사업	결산액	구성비		



# 세입결산 명세서

(단위 : 원)

			과목		예산액	예산현액	결산액	산출기초(원)	비고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71 7 7	게난단기	201	근 출기 <del>그</del> (전)	71.32
	세입합계								

# 세출결산 명세서

(단위 : 원)

	사업								
정책	단위	세부	세부 항목	원가통 계비목	예산액	예산현액	결산액	산출기초(원)	비고
		세출합계	•						



### <서식 7>

### 예비비사용명세서

(단위 : 원)

	과		목		총사업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지출		
정 책	단 위	세 부	항목	원 가 목	(예산현액)	지 출 결정액	사용액	사 용 잔 액	결정일	예비비 사용내역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8>

# 세 출 예 산 이(전) 용 명 세 서

(단위:천원)

	과 목				이(전	)용액	이(전)용사유
정책	단위	세부	항목	원가목	증	감	기(전)중사표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 9>

### 계속비조서

(단위: 천원)

사업	구	총	전전	전전회계연도이전			전회계연도			○○ 회계연도	○○ 회계연도
사업 명	분	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계획액	계획액	계획액
	당초										
	수정										
	계										

(주) 전회계연도란까지는 예산액·집행액·집행잔액을 기입하고 당해 회계연도란부터는 계 획액만을 기입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 10>

### 명시이월비명세서

(단위:천원)

정 책	고 단 위	나 년 세 부	목 항 목	원 가 목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지출잔액 ③	이월액 ④	불용액 ①-②-④	사 유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서식 11>

# 사고이월비명세서

(단위: 천원)

	고	}	목		예산	지출원인	지출액	지출잔액	이월액	불용액	
정책	단위	세부	항 목	원 가 목	에건 현액①	해위액②	3	(4)=Q- 3)	5	1-3-5	사 유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 12>

# 계속비이월명세서

(단위:천원)

정 책	단 위	바 세 부	목 항 목	원 가 목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 현액 ①	지출액 ②	이월액 ③	불용액 ①-②-③	사 유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서식 13>

# 불용 사유별 현황

회계연도 : 학 교 명 :

(단위: 원)

				사유별 미수납액							
세부사업	예산현액	불용액	계획변경 및 취소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운영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기타	계	불용비	

# 2014학년도 공립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단위단가표



# 1. 201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단위단가표

(금액단위 : 원)

사 업 명	단위	2014	2013	증감	비 고
□ 일·숙직 수당					
○일직비	일/1인	50,000	70,000	△20,000	
o숙직비	야/1인	50,000	50,000		
 □ 위원회 참석수당					
 ㅇ기본	일당	70,000	70,000		
○초과	일당	30,000	30,000		2시간 초과시 1일 1회에 한함
□ 급량비					
ㅇ매식비	1인/1식	7,000	7,000		
 ○합숙숙박비	1박	40,000	40,000		
○간식비	1인/1일	2,000	2,000		
□ 급량비(학생)					각종대회 참가학생
ㅇ매식비	1인/1식	7,000	7,000		
○간식비(유·초·중·고)	1인/1일	2,000	2,000		
□ 원고료(국문A4용지)	1매/시간당 3매	14,000	14,000		A4규격, 12포인트, 행간격160mm
□ 파워포인트	1매/시간당 6매	7,000		신설	
□ 상품비					단가는 한도액임
ㅇ교직원	1인/1점	30,000	30,000		
○학생	1인/1점	20,000	20,000		
□ 당직용 침구					
0구입비	1조	50,000	50,000		
○세탁료	1회	10,000	10,000		
□ 일용직 노임단가	일당	60,236	57,859	2,377	보통인부
□ 교육강사 수당					기본료: 최초1시간 초과: 초과 1시간당
○특별강사1	기본료	300,000	300,000		【붙임】 참조
○ 〒 〒′♂ / T I	초 과	200,000	200,000		
○특별강사2	기본료	200,000	200,000		
○〒〒⊘ハZ 	초 과	150,000	150,000		



사 업 명	단위	2014	2013	증감	비	고
○일반강사1	기본료	160,000	160,000			
	초 과	90,000	90,000			
○일반강사2	기본료	100,000	100,000		【붙?	]] 참조
	초 과	60,000	60,000			
○일반강사3	기본료	80,000	80,000			
	초 과	40,000	40,000			
	시간당	50,000	50,000		외국어·체육	··전산강사
○보조강사1	시간당	50,000	50,000		[붙인	]] 참조
○보조강사2	시간당	30,000	30,000			
□ 정보화기기						
○컴퓨터(LCD모니터포함)	대당	1,000,000	1,000,000			
0노트북	대당	1,400,000	1,400,000			
○LCD모니터	대당	300,000	300,000			
○업무용 프린트기	대당	970,000	970,000			
· 스캐너	대당	500,000	500,000			
○책상(컴퓨터용)	개당	190,000	190,000			
○의자(컴퓨터용)	개당	50,000	50,000			
□ 도서관운영						
○서가(복식7단2련)	대당	690,000	690,000			
○서가(복식6단2련)	대당	650,000	650,000			
ㅇ서가(단식7단2련)	대당	460,000	460,000			
○서가(단식6단2련)	대당	400,000	400,000			
○잡지가	대당	500,000	500,000			
○신문열람대	대당	300,000	300,000			
<ul><li>○열람테이블</li></ul>	개당	250,000	250,000			
<ul><li>○열람의자</li></ul>	개당	50,000	50,000			
□ 교육기자재						
○실물화상기	대당	1,250,000	1,250,000			
○실험대	대당	550,000	550,000			
o 어학실습기	대당	500,000	500,000			
○전자오르간	대당	700,000	700,000			



사 업 명	단위	2014	2013	증감	비	고
○진열장	대당	400,000	400,000			
0피아노	대당	3,000,000	3,000,000			
○ PDP TV(50")	대당	1,900,000	1,200,000	700,000		
○LCD TV(46")	대당	1,600,000	1,100,000	500,000		
○ LED TV(46")	대당	1,550,000	1,550,000			
○ LED TV(55")	대당	2,720,000	2,720,000			
□ 사무기기 및 일반비품						
○복사기	대당	3,000,000	3,000,000			
○ 윤전등사기	대당	4,400,000	4,400,000			
○에어컨(21㎏)	대당	3,000,000	3,000,000		60평	형
○에어컨(8.3㎞)	대당	1,500,000	1,500,000		25평	형
○에어컨(5.5kW)	대당	1,000,000	1,000,000		15평	형
○ 냉난방기 (냉방21/난방24kW,직립형)	대당	3,500,000	3,500,000		60평	형
○ 냉난방기 (냉방8.3/난방9.5㎢,직립형)	대당	2,000,000	2,000,000		25평	형
○ 냉난방기 (냉방5.5/난방5.7㎢,직립형)	대당	1,500,000	1,500,000		15평	형
○모사전송기	대당	460,000	460,000			
○사무용책상	대당	230,000	230,000			
○사무용의자	대당	180,000	180,000			
O케비닛	개당	260,000	260,000			
○접의자	각당	30,000	30,000			
○냉장고(500리터이하)	대당	500,000	500,000			
ㅇ카세트(CD겸용)	대당	150,000	150,000			
ㅇ정수기	대당	600,000	600,000			
○코팅기	대당	360,000	360,000			
<ul><li>이디지털카메라</li></ul>	대당	510,000	510,000			
o선풍기	대당	40,000	40,000			
○소화기	대당	20,000	20,000			
○응접세트	조당	550,000	550,000			
ㅇ옷걸이	개당	40,000	40,000			
○TV(32")	대당	600,000	600,000			



사 업 명	단위	2014	2013	증감	비	고
○VTR(DVD겸용)	대당	250,000	250,000			
○문서천공기(전기)	대당	1,000,000	1,000,000			
○문서천공기(수동)	대당	210,000	210,000			
○전화기(키폰)	대당	200,000	200,000			
○전화기(일반)	대당	30,000	30,000			
○문서세단기	대당	700,000	700,000			
□ 차량 임차료						
ㅇ버스 임차	1대/1일	400,000	400,000		통행료, 주	차료 포함
□ 기타						
· ○관보구독료	월	40,000	40,000			
○교육법전	권	90,000	90,000			
○현수막						
- 대형	개	100,000	100,000			
- 소형	개	50,000	50,000			
○방독면	개당	67,000	67,000			
○방호원복	명당	100,000	100,000		동,	하복
 ○위생복	명당	50,000	50,000		위생모,위신	]화 등 일체
○작업복	명당	50,000	50,000			

<sup>※</sup> 단가표에 없는 경우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방침 및 기준, 조달청 기준단가 등을 적용

# 2. 기타 단위 단가

-	구분	찾아가기						
	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www.cak.or.kr) $\rightarrow$ 건설업무 $\rightarrow$ 건설적산기준 $\rightarrow$ 건설임금						
노임단가	제조부문	증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 주요사업 →통계 → 제조업노임단가						
국외항공요급		아시아나애바카스(www.travelportal.co.kr) → 항공권 예약 → 운임조회						
인쇄기준요		폐지됨. 조달청(www.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b>인쇄기준</b> <b>요금 폐지 안내</b>						
지적측량업년	구 수수료	대한지적공사(www.lx.or.kr) → 고객 → 지적측량 → 안내마당→지적측량수수료						
통번역료		한국외국어대학교통번역원(www.hufscit.com) → 통역 or 번역 → 요율표						
시중 물가 정보(공공요금)		한국물가정보(www.kpi.or.kr) → 물가정보						
공시지가		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reic.org/realtyprice) → 표준지공/ 지가						



# [붙임] 교육강사 수당

구 분	적 <del>용</del>
ㅇ특별강사1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교육운영상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시간당 50만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
○특별강사2	<ul> <li>○ 전·현직 장·차관, 전·현직 국회의원</li> <li>○ 전·현직 대학총장(급), 전·현직 교육감</li> <li>○ 대기업 총수(회장), 국영기업체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장</li> <li>○ 인간문화재, 유명 예술인</li> <li>○ 교육운영상 교육감이 특별히 인정하는 강사</li> </ul>
○일반강사1	<ul> <li>○ 대학 전임강사 이상</li> <li>○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임원(이사급 이상)</li> <li>○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li> <li>○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li> <li>○ 문화・예술 등 특별분야의 전문강사</li> <li>○ 4급 과장(담당관)직위 이상의 공무원</li> <li>○ 과장(담당관)이상 직위의 장학관(교육연구관)</li> <li>○ 유·초·중등학교장</li> <li>○ 박사학위를 소지한 4급, 5급 공무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li> <li>○ 해당분야 전문가로 특별 및 일반 2-3급, 보조강사, 다수인 강사 이외의 강사</li> </ul>
○일반강사2	○ 대항 시간강사 ○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직원으로 1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 4급·5급 공무원, 장학관(교육연구관), 교감, 장학사(교육연구사) ○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 외국인(원어민)강사
○일반강사3	○ 6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제1, 2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외국어·체육·전산강사 등 강사
○보조강사1	ㅇ 각종 실기 및 실습 보조자(전산보조 제외)
○보조강사2	ㅇ 전산 실기 및 실습 보조자



# 지원금 업무처리 절차 안내

# 1 지원금 처리 절차

### □ 처리방법

### 세입예산

- ① [성질별]기초지방자치단체전입금
  - 세입예산 편성
  - 전입금징수결의 및 수납처리
- ③ [성질별]급식비
  - 세입예산 편성
  - 급식비 징수결의 및 수납처리

### 세출예산

- ② [사업별]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성질별]학생복지비
  - 세출예산 편성
  - 학교계좌로 지원금 지출처리
- ④ [사업별]급식관리 [성질별]급식비
  - 세출예산 편성
  - 지출처리
- ① (지원사업) 목적사업비에 대한 세입예산 편성
  - 목적사업비에 대한 전입금 징수결의 및 수납처리
- ② (지원사업) 지원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
  - 지원금에 대한 지출처리(학교계좌로 지출)
- ③ (해당사업) 수익자부담수입에 대한 세입예산 편성
  - 지원금을 포함하여 수익자부담수입에 대한 징수결의 및 수납 처리(지원금은 직접수납 처리함)
- ④ (해당사업) 세출예산 편성
  - 사업 관련 지출 처리



### 업무별 주요 사항

### □ 예산편성

- 예산편성에 대한 처리과정은 현행과 동일함
  - 수익자부담수입에 대한 세입예산편성은 지원금(목적사업비)을 포 함하여 편성함
    - ※ 예시) 목적사업비가 50원, 학부모부담수입이 50원일 경우 급식비에 대한 수익자부담수입은 100원으로 편성
- 예시
  - 목적사업비(급식비지원) 50원, 수익자부담수입 100원(지원금 포함)일 경우

T.J					세	출			세입재원						
책	정 단 세부사 책 위	세부사업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 계비목	산출 내역	예산 액	장	관	항	목	원가통 계비목	산출 내역	예산 액
학성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교육 격차 해소	저소득층 자녀지원	학교 운영비	학교 운영비	교육 운영비	학생 복지비	급식비 지원	50	이전 수입	지방자치 단체이전 수입	비법정 이전수입	기초지방 자치단체 전입금	급식비 보조금	구청 지원금	50
	급식 관리	학교급식 운영	운영비	학교 운영비	일반 운영비	급식용 식재료 비 등	급식 운영비	100	자체 수입	학부모 부담수입	수익자 부담수입	급식비	급식비	급식비	100

### □ 징수결의

- 지원금을 포함한 징수결의 처리절차는 현행과 동일함
  - 지원금에 대한 수납 시 수납금에 대한 원가통계비목은 세입예산 편성 시 등록한 원가통계비목으로 처리됨(현행과 동일)
    - ※ 예시) 지원금을 포함한 급식비(100원)에 대하여 징수결의에서 선택한 원가 통계비목(자체수입>수익자부담수입>급식비)으로 수납처리 됨
- 징수결의 시 지원금과 개인부담금을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을 경우 결산에서 확인할 수 없음



### ○ 예시

- 목적사업비(급식비지원) 50원, 수익자부담수입(지원금포함) 100원일 경우

징수경	별의
원가통계비목	
개인부담금	50 원
지원금	50 원
징수결정액	100 원

원가통계	비목 : 급식비
수납액	100 원

수납처리

### □ 예산결산

- 징수결의 시 지원금을 포함하여 징수결의한 경우 수납된 지원금을 학부모부담지원금 수입으로 분리하여 결산자료를 생성함
  - ※ 예시) 개인부담금(50원)과 지원금(목적사업비: 50원)으로 징수결의 한 경우 예산결산에서는 개인부담금은 급식비로, 지원금은 급식지원금수입으 로 자동 집계됨
  - ※ 세입액과 결산액의 비교를 위해 지원금수입을 분리/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예정

#### ○ 예시

- 목적사업비(급식비지원) 50원, 수익자부담수입(지원금포함) 100원일 경우

,	세입액		
원가통계비목	세입으		
급식비	개인부담금	50 원	
) 14 년 미	지원금	50 원	. 7
총 수납액		100 원	

원가통계비목	결산액
급식비	50 원
급식지원금수입	50 원
총 결산액	100 원

결산액

※ 지원금(목적사업비: 100원)에 대한 징수결의 한 경우에만 예산결산에서 급식지원금수입으로 자동 집계됨

#### ※ 세입결산서

장	관	항	목	예산액	결산액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수익자부담수입	급식비	100 원	50 원
자체수입	지원금부담수입	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급식비지원금수입	0 원	50 원



# 2014년 학교회계 세부사업명 표준화 추진 계획

<기획조정관>

### 1. 목적

- 변화하는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예산과목의 적정한 운영으로 교직원의 학교회계 업무경감 및 효율성 제고
- 지역 강사가 소속된 일부학교를 시범운영학교로 선정하여 시범운 영에 따른 시행착오 최소화

### 2. 세출 세부사업명 표준화 추진 계획

○ 세부사업 표준화 추진 절차

▶일부학교 시범 운영 · 시범운영 학교는 표 준 세부사업명으로

예산 편성 · 운영

시범 운영

(~ '14.12 )

표준화 방안 협의 ('14.2분기)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 으로 표준화 방안 협의 · 표준화 여부 및 시 행시기 결정 등

표준화 시행 ('15년 이후)

- ▶표준화 추진을 위한 각종 제반 사항 준비
  - 회계규정 개정
  - •에듀파인 기능 개선

- 세부사업 표준화 운영 방안
  - (시범운영 규모)
    - ▶ 학교급별, 설립별, 지역별(도시·농촌) 여건 등을 고려 하여 14~16 개 학교 선정
  - (시범운영학교 운영 지원) 시범운영 학교는 표준 세부사업명으로 예 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 예산편성시 상담지원, 추경 또는 성립전 편성시 운영방법 안내 등
  - (세부사업 표준화 지원팀 구성 운영) 시범운영 학교의 예산편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범운영학교 담당자로 구성된 T/F팀 구성

- ▶ 초・중・고등학교 급별로 그룹화하여 그룹별 1~2명 추천 총 6~8명으로 구성
- ▶ 기존 세부사업의 통합·분리 등에 대한 문의 답변
- ▶ 세부사업의 효과적 통합 방안에 대한 교육지원
- ▶ 표준 세부사업명 사용 점검 등
- (세부사업명 추가 방법)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추가 세부사업명 을 심의하여 추가 여부를 확정한 후 총괄센터에 안내
  - ▶ (학교) T/F팀에게 세부사업명 추가 요청(메일, 전화 등 이용)
  - ► (T/F팀) 시범학교의 추가요청을 검토하여 교육청에 추가 요청 (메일, 전화 등 이용)
  - ► (교육청) 검토 후 세부사업명 추가 여부를 T/F팀 및 학교에 안내(전화 등 이용)
  - ▶ (교육청) 종합 관리를 위해 총괄센터에 통보(메일, 전화 등 이용)

※ 2014학년도 세출 세부사업명 표준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시 달될 교육부의 추진 계획과 자체 회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12월 말)



### [참고] 201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과목 체계 개편 내용

- □ (세입) 목 12개, 원가통계비목 12개 등 24개 개정
- (목, 원가통계비목 통합) 체험학습비와 수련활동비를 **현장체험학습비로 통합**
- (목, 원가통계비목 세분화) **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세분화**(3개→12개)
- (목, 원가통계비목 추가)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누리과정지원 추가**
- □ (세출-사업별) 단위사업 1개, 세부사업 15개 등 16개 개정
- (단위시업 추가) 학생생활지도 및 학교폭력 관련 시업 확대로 생활지도운영 추가
- (세부사업 통합) **학교상담실(Wee클래스) 운영**을 학교상담실 운영에 **통합**
- (세부사업 세분화) 지원금 처리를 위한 **교육격차해소 세부사업 세분화**
- □ (세출-성질별) 목 1개, 세목 2개, 원가통계비목 3개 등 총 6개 개정
  - (목, 세목 추가) 자산취득비(목그룹)에 **기타자산취득비**(목), (세목) **추가**
  - (세목 이동) 학교운영비(목)의 직책급업무추진비(원가통계비목)를 업무추진비(목)의 (세목)으로 이동
  - (원가통계비목 수정)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를 **학교직원인건비로 수정**

# 2014학년도 공립학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계획



### 1. 2014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기본방향 및 지원 개요

#### 가. 기본방향

- 단위학교의 효율적인 예산운영 및 교육 활동 지원
-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제고 및 책무성 강화
- 불용액 과다 발생 방지 및 해소

#### 나. 지원개요

- 학교기본운영비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표준교육비(2011년)를 기초로 하여, 학급편성현황(2013. 3. 1.)와 2014년 신설학교, 폐지예정학교를 반영하여 학교급, 학급수, 학생수에 따라 지원
- 학교 규모간, 계열간, 단설 및 병설, 통합학교 등 학교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급별. 학급단위별 표준교육비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학교별 불균형 최소화
- 종전 소관부서에서 별도로 예산 배부 하던 목적사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하여 총액 배분함으로써 학교 실정에 맞는 예산의 편성 · 집행을 통하여 단위학교 예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및 책무성 강화

### 다. 학교기본운영비 산출기준 : 2013. 3. 1. 학급수 및 학생수 기준 적용 학교당 경비: 학교급별, 규모별 차등 적용

- ㅇ 단설유치원: 1~8학급 기준 적용
- 초등학교: 1~6학급, 6학급 이상 3학급 단위로 16단계 차등 적용
- 중 학 교: 1~6학급, 6학급 이상 3학급 단위로 16단계 차등 적용
- 고등학교: 1~6학급, 6학급 이상 3학급 단위로 14단계 차등 적용
- 특수학교: 1~6학급, 6학급 이상 3학급 단위로 14단계 차등 적용

### 『2014년도 학교기본운영비 학교단위 경비 변동』

(단위: 천원)

급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기타고
전년 대비	동결	동결	19학급이상 2% 인상	25학급이상 2% 인상	동결



# 『2014년도 학교기본운영비 단가』

(단위: 천원)

급	규모별	,	14년			'13년			증감액							
별	(학급 수)	교당	급당	학생당	교당	급당	학생당	교당	급당	학생당						
유 치	3 ~ 8	94,052	4,876	163	94,052	4,876	163	0	0	0						
_ 원																
	1 ~ 6	170,600			170,600			0								
	7 ~ 9	185,370			185,370			0								
	10 ~ 12	200,140			200,140											
	13 ~ 15 16 ~ 18	216,436 232,733			216,436 232,733			0								
	19 ~ 21	232,733			247,665			0								
÷	$\frac{19}{22} \sim 24$	262,597			262,597			0								
초	25 ~ 27	275,470			275,470			0								
둥	28 ~ 30	288,344	2,887	193	288,344	2,887	193	0	0	0						
학	31 ~ 33	301,832	2,001	130	301,832	2,007	130	0	O	0						
亚	34 ~ 36	315,321			315,321			0								
	37 ~ 39	328,422			328,422			0								
	40 ~ 42	341,524			341,524			0								
	43 ~ 45	355,161			355,161			0								
	46 ~ 48	368,799		_	368,799			0								
	49 ~ 52	382,436			382,436			0								
	53 ~ 60	396,074			396,074			0								
	1 ~ 6	190,543								190,543			0			
	7 ~ 9	223,106				223,106			0							
	10 ~ 12	255,670									255,670			0		
	13 ~ 15	277,867							277,867			0				
	16 ~ 18	300,065			300,065			0								
	19 ~ 21	332,733			326,209			6,524								
중	22 ~ 24	359,400			352,353		001	7,047								
	25 ~ 27	383,102	0.000	2,383 221	375,590	0.000		7,512	0	0						
학	28 ~ 30	406,805	2,383		398,828	2,383	221	7,977	0	0						
亚	31 ~ 33	420,477				412,232			8,245							
	34 ~ 36 37 ~ 39	434,149 447,894			425,636 439,112			8,513 8,782								
	40 ~ 42	461,641			452,589			9,052								
	43 ~ 45	478,834			469,445			9,389								
	46 ~ 48	496,028			486,302			9,726								
	49 ~ 52	513,221			503,158			10,063								
	53 ~ 60	530,415			520,015			10,400								
	1 ~ 6	217,233			217,233			0								
일	7 ~ 9	251,621			251,621			0								
반	10 ~ 12	286,009			286,009	1		0								
	13 ~ 15	310,783	2,660	50	310,783	2,660	50	0	0	0						
계	16 ~ 18	335,557			335,557			0								
고	19 ~ 21	362,410			362,410			0								
	22 ~ 24	389,263			389,263			0								



급	규모별	,	14년		,	13년			증감액																																							
별	(학급 수)	교당	급당	학생당	교당	급당	학생당	교당	급당	학생당																																						
	25 ~ 27	422,433			414,150			8,283																																								
	28 ~ 30	447,819			439,038			8,781																																								
	31 ~ 33	464,717			455,605			9,112																																								
	34 ~ 36	481,616			472,173			9,443																																								
	37 ~ 39	498,990			489,206			9,784																																								
	40 ~ 42	516,364			506,239			10,125																																								
	43 ~ 45	533,586			523,124			10,462																																								
	46 ~ 48	550,810			540,010			10,800																																								
	1 ~ 6	246,056			246,056			0																																								
	7 ~ 9	277,474			277,474			0																																								
	10 ~ 12	308,883			308,883			0																																								
•1	13 ~ 15	352,015			352,015			0																																								
상	16 ~ 18	395,147			395,147			0																																								
업	19 ~ 21	413,696			413,696			0																																								
•	22 ~ 24	432,245	1.000	1.4.0	432,245	1.000	1.4.0	0	0																																							
종	25 ~ 27 28 ~ 30	472,813	1,360	146	472,813	1,360	146	0	0	0																																						
합	31 ~ 33	513,381 560,980			513,381 560,980			0																																								
고	34 ~ 36	608,579			608,579			0																																								
71	37 ~ 39	631,727			631,727			0																																								
	40 ~ 42	654,875			654,875			0																																								
	43 ~ 45	670,181			670,181			0																																								
	46 ~ 48	685,488			685,488			0																																								
	1 ~ 6	287,779			287,779			0																																								
	7 ~ 9	334,242			334,242			0																																								
1	10 ~ 12	380,705				-								-																								-					380,705			0		
농	13 ~ 15	435,006															435,006			0																												
•	16 ~ 18	489,307																						489,307			0																					
수	19 ~ 21	527,745							527,745			0																																				
산	22 ~ 24	566,183																														566,183			0													
	25 ~ 27	614,233	1,478	151	614,233	1,478	151	0	0	0																																						
, 71	28 ~ 30	662,283			662,283			0																																								
가	31 ~ 33	692,535			692,535			0																																								
사	34 ~ 36	722,787			722,787			0																																								
고	37 ~ 39 40 ~ 42	750,583			750,583			0																																								
	40 ~ 42	778,379 818,617			778,379 818,617			0																																								
	46 ~ 48	858,856			858,856			0																																								
	1 ~ 6	327,205			327,205			0																																								
	7 ~ 9	370,926			370,926			0																																								
	10 ~ 12	414,647			414,647			0																																								
공	13 ~ 15	480,223			480,223			0																																								
업	16 ~ 18	545,800	1,994	157	545,800	1,994	157	0	0	0																																						
	19 ~ 21	601,246	1,334	107	601,246	1,334	101	0	U																																							
고	22 ~ 24	656,692			656,692			0																																								
	25 ~ 27	721,750			721,750			0																																								
	28 ~ 30	786,809			786,809			0																																								



급	규모별	′14년		′13년			중감액			
별	(학급 수)	교당	급당	학생당	교당	급당	학생당	교당	급당	학생당
	31 ~ 33	842,581			842,581			0		
	34 ~ 36	898,354			898,354			0		
	37 ~ 39	928,257			928,257			0		
	40 ~ 42	958,160			958,160			0		
	43 ~ 45	1,018,722			1,018,722			0		
	46 ~ 48	1,079,285			1,079,285			0		
	1 ~ 6	243,575	5,185		243,575	5,185	503	0	0	0
	7 ~ 9	256,772		503	256,772			0		
	10 ~ 12	269,970			269,970			0		
	13 ~ 15	281,872			281,872			0		
	16 ~ 18	293,774			293,774			0		
특	19 ~ 21	306,022			306,022			0		
수	22 ~ 24	318,271			318,271			0		
	25 ~ 27	330,339			330,339			0		
학	28 ~ 30	342,407			342,407			0		
亚	31 ~ 33	354,643			354,643			0		
	34 ~ 36	366,880			366,880			0		
	37 ~ 39	377,474			377,474			0		
	40 ~ 42	388,068			388,068			0		
	43 ~ 45	399,439			399,439			0		
	46 ~ 48	410,810			410,810			0		

#### ※ 1. 2014년도 변경 사항

보통교부금 감소에 대응하고, 과다한 학교회계 불용액 발생 방지 및 해소 를 위해 학급당 경비와 학생당 경비는 동결하되. 인건비 및 각종 공공요 금 인상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기본운영비가 부족한 일정규모 이상 중학 교 및 일반계고등학교의 학교당 경비를 2% 인상함.

#### 2. 적용 예외 기준

- 중·고 병설(통합)교 경비
- 중 학 교: 단설교 교당경비의 2/3지원
- 고등학교: 단설교 경비 100%지원
- ㅇ 분교: 단설교 교당경비의 40%지원
- 신설학교: 3. 1.자 개교(10/12 지원), 9. 1.자 개교(4/12 지원)
- o 폐교학교: 3. 1.자 폐교(2/12 지원), 9. 1.자 폐교(8/12 지원)
- ㅇ 특수목적고 및 마이스터고, 방송통신고: 기본운영비 추가 지원
- ㅇ 도서벽지(울릉) 지역: 기준경비의 1.1배 가산 지원
- BTL학교: 초등학교(15%감액지원), 중·고등학교(10%감액지원)



#### 라. 2014년 학교기본운영비의 구성

#### □ 기본운영비(학교당, 학급당, 학생당 경비)

ㅇ 2011년 표준교육비를 기초로 하여 기존 사업별 소관부서의 목적사업비를 기본운영비에 통합하여 단위학교 예산편성의 자율권 보장

#### 『2014년도 학교기본운영비 통합 사업 현황』

(단위: 처워)

사업명	통합사업 금액	비고	
특수통합학급 교재비 지원외	다이하고병 지체 경제	「워ㅂ1]차굿	
48개 사업	단위학교별 자체 결정	[첨부1]참조	

### □ 추가지원사업비

ㅇ 기존의 목적성 사업경비를 추가지원사업비로 편성하여 총액 배분함으로써 학교기본운영비를 확대하고, 학교 실정에 맞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통해 단위학교 예산편성의 효율성 제고

#### 『2014년도 학교기본운영비 추가지워 사업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추가지원사업 금액	비고
특수교육실무사 인건비외 20개사업	93,580,602	[첨부2]참조

<sup>※</sup> 추가지원비의 소요 경비 부족분은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충당

### 마. 기타사항

#### □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금지

○ '12. 8. 23. 헌법재판소,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의 세입근거 규정 위헌 결정

#### □ 시설적립금 제도 시행

- ㅇ 각급학교에서는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 사업비 예산 편성
  - 편성기준: [첨부1] 2014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 통합사업 참조
- ㅇ [세출예산과목:적립금]: 학교시설사업을 위해 다년간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시설적립금을 위해서는 관할 교육청(지역교육청 또는 도교육청) 예산부서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바. 참고 사항

□ 2014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경상북도교육청 기획조 정관 홈페이지 자료실에 탑재할 예정 (http://www.gbe.kr)



### [첨부1]

# 2014년도 학교기본운영비 통합 사업

### - 학교기본운영비에 통합된 사업으로 학교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 예산 편성 -

(단위 : 천원)

연번	소관부서	통합사업명	산출단위	기준단가	급별	비고
공통	기획조정관	교구·설비비 ※ 각 과목별 수업을 위해 소요되는 교구비와 설비비 - 교구·설비 및 책상·의자·컴퓨터 등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기본적 설비		자체결정	유,초,중,고,특	
		창의적체험활동 경비 ※ 창의적체험활동(적응활동, 자치활동, 행사활동, 창의적 특색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교당			
		공통운영경비 ※ 학교 운영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 - 학교회계직원인건비,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학교일반운영(운동부, 학운위, 학부모운영 등), 학습지원실운영, 교육여건개선사업, 학생복리비 등				
1	교육정책과	특수통합학급 교재비 지원	해당학급당	200	초,중,고	
2	교육정책과	공립 특수학교 기숙사 지원	교당(학생당)	기준단가	특	
3	교육정책과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해당학급당	3,000	유,초,중,고	
4	교육정책과	특수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학생당	20	특	
5	교육정책과	특수학교 특별활동 지원	교당	2,000	특	
6	교육정책과	특수학교 학부모연수 지원	교당	1,000	특	
7	교육정책과	특수학교 1교1사 직업교육 지원	교당	25,000	특	
8	교육정책과	특수학교 기숙사청소 및 세탁용역비 지원	교당	10,843	특	
9	교육정책과	초·중학교 영어체험캠프 운영	교당	실소요액	초,중	
10	교육과정과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비 지원	교당	500	유	3학급이상 →전체
11	교육과정과	유치원 교재교구 지원	교당	2,000	유	
12	교육과정과	유치원 도서구입비 지원	교당	1,000	유	
13	교육과정과	유치원 교무행정사 인건비(단설유)	교당	21,275	유	275일 →365일
14	교육과정과	책읽어주기 연수 운영비 지원	교당	500	초	
15	교육과정과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	교당	기준단가	초,중,고,특	
16	교육과정과	기초학력튼튼교실 운영	교당	기준단가	초	
17	교육과정과	기초학력튼튼캠프 운영	교당	기준단가	초	
	•					



연번	소관부서	통합사업명	산출단위	기준단가	급별	비고
18	교육과정과	학습부진학생 책임 지도	학생당	기준단가	초,중고	
19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학생당	30이상	초	
20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입시 관리비	해당학교당	실소요액	고	
21	교육과정과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비	해당학교당	실소요액	고	
22	과학직업교육과	자영농수산고 자영자 육성	해당학급당	기준단가	고	
23	과학직업교육과	첨단시설 운영(김천생명과학고)	교당	72,000	고	김천생명과 학고
24	과학직업교육과	특성화고 실험실습비 지원	급당	4,000	고	
25	과학직업교육과	가사계열고 실험실습비 추가지원	급당	5,000	고	
26	과학직업교육과	특성화고 기자재 수리	교당	4,000	고	
27	과학직업교육과	특성화고 직업기초능력평가	교당	실소요액	고	
28	과학직업교육과	민간개발 교육용콘텐츠 구입비	교당	1,000	초,중,고,특	
29	체육건강과	보건실 시설기구 확충비	교당	실소요액	초,중,고,특	
30	체육건강과	학생 건강검사비	학생당	기준단가	초,중,고,특	
31	체육건강과	학교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비	급당	실소요액	유,초,중,고,특	
32	체육건강과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경비	교당	1,000	고	
33	체육건강과	깨끗한학교 만들기	교당	13,000	단설유,초,특	
34	체육건강과	결핵검사비	학생당 (고2,3)	기준단가	고	
35	체육건강과	급식운영비 지원	학생당	기준단가	초,중,고,특	
36	체육건강과	우수식재료 구입비 지원	학생당	기준단가	초,중,고,특	
37	체육건강과	정신건강시범운영비 지원	교당	1,000	초,중,고	
38	생활지도과	1인 1악기 운영	교당	5,000	초,중,고,특	
39	생활지도과	문화체험학습 지원	교당	1,000	초	6학급이하 →전체
40	생활지도과	저소득층학생 수련활동및수학여행비 지원	학생당	기준단가	초,중,고,특	
41	생활지도과	학교폭력예방 학급운영비 지원	학급당	100	초,중,고,특	
42	생활지도과	책임교사 수업경감 및 대안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교당	실소요액	초,중,고,특	기본운영비의 3%내외편성
43	총무과	당직면제비	교당	기준단가	유,초,중,고,특	
44	행정지원과	농업계고 정원조정 대체인건비	해당학교당	기준단가	고	김천생과고 한국생과고
45	행정지원과	BTL사업학교 인건비 지원	해당학교당	5,700	고	
46	행정지원과	학교컴퓨터 및 영상장비 구입	교당	실소요액	유,초,중,고,특	
47	학교지원과	교무행정사 인건비 지원	교당	21,649	초,중,고,특	
48	학교지원과	교과용 도서 지원	학생당	실소요액	유,초,중,고,특	
49	재무정보과	인터넷 통신비 지원	교당	기준단가	유,초,중,고,특	



### <mark>공통사항</mark> 교구설비비

<기획조정관 ☎603-3686>

#### ■ 개 요

-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제고 및 책무성 강화
- 2011년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자료[한국교육개발원]

#### ■ 사업내용

- 표준교육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교육과정에 명시된 모든 교과활동을 정상적 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구비와 설비비
  - 수업에 필요한 기교재로서 1년 이상의 내구연한을 지닌 물품
  - 교구·설비 및 책상·의자·컴퓨터 등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기본적 설비 구입
-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 금액: 학교별 소요경비 반영

### <mark>공통사항</mark> 창의적체험활동경비

<기획조정관 ☎603-3686>

#### 재 요

-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제고 및 책무성 강화
- 2011년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자료[한국교육개발원]

#### ■ 사업내용

- 2009 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가지 영역별 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자율활동**: 적응활동, 자치활동, 행사활동, 창의적 특색활동 등
  - **동아리활동**: 학술활동, 문화예술활동(동아리운영), 스포츠활동(스포츠클럽 운영), 실습노작활동, 청소년단체활동 등
  - **봉사활동**: 교내봉사활동, 지역사회봉사활동, 자연호보활동, 캠페인활동 등
  - **진로활동**: 자기이해활동(진로적성검사), 진로정보탐색활동, 진로계획활동, 진로체험활동 등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금액: 학교별 소요경비 반영

### <mark>공통사항</mark> 공통운영경비

<기획조정관 ☎603-3686>

#### ■ 개 요

-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제고 및 책무성 강화
- 2011년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자료[한국교육개발원]

### ■ 사업내용

- 학교 운영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학교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고유 목적활도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경비와 교수·학습활동을 지원· 조장하는 행정지원활동 경비
  - 인건비: 교무행정사, 행정실무원, 학교운영지원비수당(중) 등
  - 공공요금: 각종검사수수료. 공공요금. 사용료 및 수수료 등
  - 학교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일숙직비, 깨끗한학교만들기, 여비, 업무추진 비, 학교위생관리, 예능부지원, 운동부지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운영 등
  - **학습지원실운영비**: 교육방송실, 교육정보실, 도서관, 보건실, 학습지원시설 등
  - 교육여건개선: 사무집기 및 비품 구입, 보건실 설비 및 기구 확충
  - 학생복리비: 학생복리비(교과서구입, 교의수당, 교지발간, 약품구입, 적성검사, 학생건강관리, 기타학생복리비), 학습준비물구입 등
-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 금액: 학교별 소요경비 반영

### <mark>공통사항</mark> 비품구입 및 시설유지관리비 지원

<기획조정관 ☎603-3686>

### ■ 개 요

-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제고 및 책무성 강화
- 2011년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자료[한국교육개발원]



#### ■ 사업내용

○ 학교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품(교구설비비 제외) 구입 및 시설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비(소규모시설사업비 포함)

### 『학교급별 비품구입 및 시설유지비 편성 기준』

(단위:처워)

구분	6학급이하	~ 12학급	~ 18학급	~ 24학급	~ 30학급	~36학급	~ 42학급	43학급이상
유치원	11,554							
초등학교	12,961	16,338	20,076	23,707	27,175	30,729	34,387	38,241
중학교	17,222	23,480	28,422	35,220	40,818	45,903	50,807	55,550
일반계고	16,308	22,083	27,027	31,220	40,073	45,313	50,660	54,730
특성화고	17,231	23,263	28,787	32,930	38,602	43,551	49,572	53,709
특수학교	16,952	21,458	25,108	29,396	33,883	38,038	41,625	45,641

※ 각급학교에서는 시설유지비에서 소규모시설비를 집행하고, 시설유지비의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현안사업 신청

○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BTL학교 제외)

○ 금액: 학교별 소요경비 반영



### 1. 특수통합학급 교재비 지원

<교육정책과 ☎603-3393>

#### ■ 개 요

- 통합학급에 배치된 학생에게 교재·교구 등을 지원하여 통합교육 내실화 기여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 2013학년도 경북특수교육운영계획[교육정책과-1541(2013.02.05.)]

#### ■ 사업내용

- 완전통합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소속된 학급에 통합교육 지원
- 대상 : 공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통합학급
- 금액: 학급당 200,000원

### 2. 공립 특수학교 기숙사 지원

<교육정책과 ☎603-3395>

#### ■ 개 요

- 특수학교 기숙사 학생에 대한 조식 및 석식비, 일반수용비 지원
- 2013학년도 경북특수교육운영계획[교육정책과-1541(2013. 2. 5.)]

### ■ 사업내용

- 공립특수학교 기숙사 재학생 : 1일 2식(조식, 석식 식비), 1식당 2.100원
- 공립특수학교 기숙사 운영비 : 월 400.000원(10개월 지원)
- 대상 : 공립 특수학교
- 금액:
  - 학생당 : 식비 2.100원×2식×160일
  - 학교당 : 일반수용비 400.000원×10개월

### 3.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교육정책과 ☎603-3393>

#### ■ 개 요

○ 특수학급의 교재 교구 구입 및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의 개별화 교육지원과 최적의 교육환경 지원





○ 2013학년도 경북특수교육운영계획[교육정책과-1541(2013.02.05.)]

#### ■ 사업내용

○ 특수학급 설치교에 교재·교구 구입 및 특수학급 운영비 지원

○ 대상 :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 금액 : 특수학급당 3,000,000원

# 4. 특수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교육정책과 ☎603-3395>

#### ■ 개 요

○ 특수학교 학생들의 학습 효율성 제고,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 교사 들의 교육과정 및 수업 운영의 어려움 해소

○ 2013학년도 경북특수교육운영계획[교육정책과-1541(2013. 2. 5.)]

#### ■ 사업내용

○ 공립특수학교의 학습 준비물 지원

○ 대상 : 공립 특수학교

○ 금액: 학생당 20.000원

## 5. 특수학교 특별활동 지원

<교육정책과 ☎603-3392>

#### ■ 개 요

- 각종 특수교육 예체능교육 활동 지원으로 특수교육 내실화 기여
- 2013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200(2013.04.02.)]

#### ■ 사업내용

- 공립특수학교의 특수교육, 예체능교육 활동 지원
- 특수학교 작품전시회. 특수학교 교직원 체육대회. 기타 예체능활동 등 지원

○ 대상 : 공립 특수학교

○ 금액: 학교당 2,000,000원



# 6. 특수학교 학부모연수 지원

<교육정책과 ☎603-3392>

#### ■ 개 요

- 학부모연수를 통해 장애학생 지도 능력 배양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 ■ 사업내용

○ 공립특수학교의 학부모 연수비 지원

○ 대상 : 공립 특수학교

○ 금액: 학교당 1,000,000원

## 7. 특수학교 1교1사 직업교육 지원

<교육정책과 ☎603-3393>

#### ■ 개 요

- 특수학교의 직업교육 강화 및 1교 1사 자매결연을 통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현장중심 직업교육 실시
- 2013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200(2013.04.02.)]

#### ■ 사업내용

- 공립특수학교에 1교 1사 지원 직업교육 지원
- 대상 : 공립 특수학교
- 금액: 학교당 25.000,000원(교육비 24,000천원, 운영비 1,000천원)

# 8. 특수학교 기숙사 청소 및 세탁용역비 지원 <교육정책과 ☎603-3395>

#### ■ 개 요

- 특수학교 기숙사 청소 및 세탁 용역비 지원으로 기숙사의 위생 환경 개선
- 2013학년도 경북특수교육운영계획[교육정책과-1541(2013. 2. 5.)]

# ■ 사업내용

○ 공립특수학교에 기숙사 청소 및 세탁 용역비 지원



○ 대상 : 공립 특수학교

○ 금액: 학교당 10,843,000원(60,236원×20일×9개월)

#### 9. 초·중학교 영어체험캠프 운영

<교육정책과 ☎603-3373>

#### ■ 개 요

- 초·중학생들의 영어 사용 및 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실용영어 사용 능력 향상
- 단위 학교별 영어체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관련 공문: 교육정책과-2678(2013. 3. 5.)

#### ■ 사업내용

- 초·중학교 학교 단위 영어체험캠프 연 1회 이상 운영
- 단위학교별 독자 운영 또는 학교간 연합 운영 가능
- 합숙의 경우 2일 이상, 비합숙의 경우 3일 이상 실시
- 영어체험캠프 운영 예산은 학교 규모, 캠프 기간, 운영 방법, 참여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적정 편성
- 학교 배치 원어민 및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을 적극 활용하고. 영어체험(전용) 교실을 최대한 이용하여 예산 절감(위탁 운영 금지)
- 지도 수당은 학교 자체 계획에 의해 편성·지급하되. 영어회화 전문강사 및 EPIK/TaLK 원어민은 계약서상 책임수업시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계약 내용대로 지급 가능
- 대상 : 공립 초· 중학교

## 10.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비 지원

<교육과정과 ☎603-3433>

#### ■ 개 요

- 교원의 전문성 진단을 통한 지속적 능력개발 지원
- 교원의 능력개발 및 유치원 구성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각 단위 유치원 의 교육력 제고와 신뢰 증진 및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 제공

#### ■ 사업내용

○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을 위한 각종 설문지발송 및 시스템 사용 및 운영을



위한 경비

○ 대상 : 공립 유치원

○ 금액: 유치원당 500.000원

# 11. 유치원 교재교구 지원

<교육과정과 ☎603-3433>

#### ■ 개 요

○ 연령별 유치원 누리과정 운영의 정상화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

#### ■ 사업내용

○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한 교재교구 지원

○ 대상 : 공립 유치원

○ 금액: 유치원당 2,000,000원

#### 12. 유치원 도서구입비 지원

<교육과정과 ☎603-3433>

#### 那 요

- 독서 습관 형성을 통한 유아의 인성 및 창의성 계발
- 다양한 책읽기를 통한 긍정적 사고력 및 자기 주도적 학습력 신장

## ■ 사업내용

○ 연령별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개정 교육과정 관련 도서구입비 지원

○ 대상 : 공립 유치원

○ 금액: 유치원당 1,000,000원

# 13. 유치원 교무행정사 인건비(단설유치원)

<교육과정과 ☎603-3434>

#### ■ 개 요

○ 교원 업무 경감을 통한 유치원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 201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경북유아교육 운영계획(2013)

#### ■ 사업내용

○ 유치원 교무행정사(1명) 인건비 지원으로 교원 행정업무 경감

○ 대상 : 공립 단설유치원

○ 금액:

- 인건비 : 유치원당 21,274,400원(365일기준)

- 각종수당 : 수당별 단가 및 자녀수, 부양가족수, 근무기간 등에 따라 산출

# 14. 책읽어주기 연수 운영비 지원

<교육과정과 ☎603-3423>

#### ■ 개 요

○ 책읽어주기 연수 운영을 통한 초등학생의 독서 습관 정착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2012. 6. 28.)

#### ■ 사업내용

○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책읽어주기 연수 실시(연 2회)

- 좋은 책 고르는 법. 동화책 및 그림책 읽어주는 법

○ 대상 : 공립 초등학교

○ 금액: 학교당 500.000원

# 15.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자 지원

<교육과정과 ☎603-3425>

#### ■ 개 요

- 학교도서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난 해소
-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 계획[교육과정과-2328(2013. 2. 6.)]

#### ■ 사업내용

- 학생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 도서부원 운영비 지원
  - 도서부원 활동비 지원(독서활동, 문학기행, 공공도서관 견학 등)
- 학부모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 교통비 지원
- 자원봉사자 연수 및 독서모임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자원봉사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연수, 선진도서관 견학 등)
- 대상 : 공립 초·중·고·특수학교
- 금액:
  - 초등학교 : 학교당 1.500.000원
  - 중・고・특수학교: 학교당 1,000,000원

# 16. 기초학력튼튼교실 운영

<교육과정과 ☎603-3427>

#### ■ 개 요

- 기초학습 및 교과학습 부진학생 재지도로 부진 누적 방지
- ○『기초학력 향상 추진 계획』교육과정과-2990, 2013.2.12.
- ○『2013 국가 기초학력 보장체제 구축 기본 계획』교육부 교육정보분석과-1193. 2013.6.18.

#### ■ 사업내용

- 학기중 방과후 시간을 이용한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
- 학기당 15주, 주당 3시간 이상 부진 과목 집중 지도
- 대상 : 공립 초등학교
- 금액:
  - 강사비 20,000원×3시간×○개반×30주
  - 운영비 200,000원(교재교구구입비)

# 17. 기초학력 튼튼캠프 운영

<교육과정과 ☎603-3427>

#### ■ 개 요

-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집중적 지도로 기초학습능력 배양
- ○『기초학력 향상 추진 계획』교육과정과-2990. 2013.2.12.
- 『2013 국가 기초학력 보장체제 구축 기본 계획』교육부 교육정보분석과-1193. 2013.6.18



#### ■ 사업내용

- 방학 기간을 이용한 기초학습지도 프로그램 운영
- 방학 기간 중 특별지도 교사에 의한 집중적인 지도
- 학습부진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대상 : 공립 초등학교
- 금액:
  - 강사비 20.000원×30시간×○개반×2회
  - 운영비 200,000원(교재교구구입비)

# 18. 학습부진학생 책임 지도

<교육과정과 ☎603-3427>

#### ■ 개 요

- 다양한 지도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기초·기본학력 책임지도제 정착
- 초3~6학년 및 중·고등학교의 교과학습 부진학생 책임지도제 정착

#### ■ 사업내용

- 학습부진학생 지도 강사료 및 교재 구입비
- 대상 : 공립 초, 중, 고등학교 학습부진학생
- 금액:
  - 강사비 20.000원×○시간×○개반
  - 운영비 200,000원(교재교구구입비)

# 19.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교육과정과 ☎603-3414>

#### ■ 개 요

-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준비물 지원으로 교육과정 정상 운영 및 학습 결손 방지
- 2013학년도 교육과정과 주요업무추진 계획



#### ■ 사업내용

○ 초등학교 학생 1인당 30,000원 이상 되도록 예산 편성

○ 왼손잡이 학생을 위한 물품이 포함되도록 지원 계획 수립 및 실행

○ 대상 : 공립 초등학교

○ 금액 : 학생당 30,000원 이상

# 20. 고등학교 입시 관리비

<교육과정과 ☎603-3443>

#### ■ 개 요

○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의 공정성, 합리성, 타당성 제고

○ 2014학년도 고등학교입학전형 기본계획[교육과정과-7222(2013.03.26.)]

#### ■ 사업내용

○ 후기 고등학교 고입선발시험 관리 소요경비

○ 대상 : 후기 비평준화 일반고등학교

○ 금액: 학교별 소요경비 반영

# 21.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비

<교육과정과 ☎603-3443>

#### ■ 개 요

-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교육 대상자들에게 방송강의 등을 통한 고등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경상북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 ■ 사업내용

- 방송통신고등학교 수업을 위한 수당 편성
-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 편성
- 대상 :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 고등학교(포항고 부설 방송통신고, 구미고 부설 방송통신고, 김천중앙고 부설 방송통신고, 안동고 부설 방송통신고)
- 금액: 학교별 소요경비 반영



# 22. 자영농수산고 자영자 육성

<과학직업교육과 ☎603-3524>

#### ■ 개 요

- 농·수산계고등학교 자영자 양성고(한국생명과학고, 포항해양과학고)의 농· 수산분야 자영자 양성을 위한 학급당 운영비 및 첨단 시설 운영비 지원
- 경상북도 농업정책과-669(2013.1.16) 및 경상북도 수산진흥과-1082(2013.1.25)

#### ■ 사업내용

- 자영농과 운영비 지원(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54,000천원
- 자영농과 첨단시설 운영비 지원(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96,000천원
- 자영수산과 운영비 지원(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18,000천원
- 자영수산과 첨단시설 운영비 지원(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96,000천원
- 대상 :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 금액:
  - 학급당 운영비 : 9학급×500.000원×12개월=54.000.000원
  - 자영농과첨단시설 운영비 : 8,000,000원×12개월=96,000,000원
  - 자영수산과운영비 지원: 3학급×6,000,000원=18,000,000원
  - 자영수산과 첨단시설 운영비 지원: 8,000,000원×12개월=96,000,000원

# 23. 자영농수산고 첨단시설 운영

<과학직업교육과 ☎603-3524>

#### ■ 개 요

- 농업분야 특성화고 첨단시설 운영비 지원(무창돈사, 무창계사, 특수가금사)
- 과학직업교육 추진 계획[과학직업교육과-1944(2013. 2.19.)]

#### ■ 사업내용

- 김천생명과학고 농업분야 첨단시설 운영: 72,000천원
  - 무창돈사, 무창계사, 특수가금사, 한우비육사
- 대상 :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 금액: 6,000,000원×12개월





# 24. 특성화고 실험실습비 지원

<과학직업교육과 ☎603-3522>

#### ■ 개 요

- 특성화고등학교의 실험·실습 교육의 활성화 및 전문기능인력 양성을 위하 여 실험 실습비 지원
- 산업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체제 구축

#### ■ 사업내용

- 특성화고 실험 실습비 지원으로 우수기능인재 양성 지원체제 구축
- 대상 : 공립 특성화고등학교
- 금액: 학급당 4,000,000원(학교별 실정에 맞게 소요경비 반영)

# 25. 가사계열고등학교 실험실습비 추가 지원

<과학직업교육과 ☎603-3522>

#### ■ 개 요

○ 가사계열 특성을 반영한 실험실습비 지원을 통하여 교육과정 정상운영 도모

#### ■ 사업내용

- 가사계열 교육과정 운영시 실험실습재료비 비중이 높은 특성을 반영하여 기본실습비 외에 가사계열 실험실습비를 추가 지원
- 대상 : 공립 가사계열 특성화고등학교
- 금액: 가사계열 학급당 5,000,000원

# 26. 특성화고 기자재 수리

<과학직업교육과 ☎603-3522>

#### ■ 개 요

○ 특성화고등학교의 실험·실습 교육의 활성화 및 전문기능인력 양성을 위하 여 노후기자재 수리비 지원



#### ■ 사업내용

○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실험실습기자재의 수리비 지원으로 전문교육 의 질 향상을 제고

○ 대상 : 공립 특성화고등학교 ○ 금액: 학교당 4,000,000원

# 27. 특성화고 직업기초능력 평가

<과학직업교육과 ☎603-3526>

#### ■ 개 요

- 직업기초능력향상을 통한 직업교육의 내실화 및 생애고용 가능성 창출
- 교육과학기술부 직업교육지원과-5156(2012, 9, 5,)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대체

#### ■ 사업내용

- 직업기초능력평가를 대비한 기자재(PC환경 조성, 관련 소모품 구입) 및 교 원역량 강화
- 2013년도부터 전 특성화고로 확대 실시(2013.12.17~12.20실시 예정)
- 평가를 위한 메모리 증설, 구입, 마우스, 키보드, 헤드셋 구입
- 대상 : 마이스터고·특성화고등학교 36개교(2학년 대상)
- 금액: 학교당 1.000.000원

# 28. 민간개발 교육용콘텐츠 구입

<과학직업교육과 ☎603-3529>

#### ■ 개 요

- 민간업체에서 개발한 다양하고 질 높은 교수·학습용 콘텐츠를 수업에 활용
- 과학직업교육 추진 계획[과학직업교육과-1944(2013, 2.19.)]

#### ■ 사업내용

- 교수·학습 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교수·학습용 콘텐츠 구매
- 교수·학습 자료 제작 및 저작용 콘텐츠 구매



○ 교육용 웹사이트 유료 사용권 구매

○ 대상 : 공립 초·중·고·특수학교

○ 금액: 학교당 1.000.000원

#### 29. 보건실 시설기구 확충비

<체육건강과 ☎603-3572>

#### 개 요

-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확충 하여 건강 보호·증진에 기여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조 2, 동법시행규칙 제2조, 2011~2014 명품경북교육

#### ■ 사업내용

○ 학교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 완비

○ 대상 : 공립 초·중·고·특수학교

○ 금액: 학교당 1,000,000원~2,000,000원 실소요액 편성

## 30. 학생건강검사비

<체육건강과 ☎603-3576>

#### ■ 개 요

- 초1, 4학년, 중1학년, 고1학년 학생에 대하여 종합건강검진 차원의 건강검 사를 실시하고 초2, 3, 5, 6학년 학생에 대하여 구강검사를 실시하여 질병 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학생 건강 증진
- 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건강검사규칙

## ■ 사업내용

- 초・중・고・특수학교 1, 4학년 학생들이 병원을 방문하여 건강검사 실시
- 초·특수학교 2, 3, 5, 6학년 학생들이 치과병원을 방문하여 구강검사 실시
- 대상 : 공립 초·중·고·특수학교
- 학생 1인당 건강 검사비

초등학생	초1학년	<u>ネ</u> 47	학년	호 9 9 E 6 하나코
조 등 역 78	조1약연	일반	비만	초2,3,5,6 학년
건강 검사비(원)	16,700	14,600	20,910	6,380



중학생	중1학년		
<b>उ</b> भ्%	일반	비만	
건강 검사비(원)	23,830	30,140	

	고1학년				
고등학생	남호	학생	여학생		
	일반	비만	일반	비만	
건강 검사비(원)	21,210	27,520	22,450	28,77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6호(2012.12.21.)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5% 인상 적용
- 학생건강검사 표본학교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2. 3. 5. 6학년 표본학생에 대한 신체발달상황 및 건강조사에 따른 경비는 학생 1인당 3,000원

# 31. 학교 감염병예방 물품 구입비

<체육건강과 ☎603-3575>

#### ■ 개 요

- 학기초 및 환절기에 학교내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 위생물품을 구입하여 감염병의 확산 및 유행을 사전에 차단함
- 2013 학교보건 기본방향[체육건강과-1393(2013.2.13.)]

#### ■ 사업내용

- 학교 감염병 예방 물품 구입(살균소독제, 손소독제, 향균비누, 마스크 등)
- 대상 :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 금액: 학교당 500,000원~1,000,000원 실소요액 편성

# 32.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경비

<체육건강과 ☎603-3564>

#### ■ 개 요

- 고등학교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경비를 지원하여 기초체력을 향상시키고 스포츠 동아리운영으로 1인 1운동 활성화
- 2013년 학교체육주요업무계획수립 시행[교육부 체육예술교육과-1063(2013. 2. 25)]



#### ■ 사업내용

○ 고등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경비

○ 학교스포츠클럽대회(지역, 도대회) 참가 경비

○ 대상 : 공립 고등학교

○ 금액: 학교당 1,000,000원

# 33. 깨끗한 학교 만들기

<체육건강과 ☎603-3576>

#### ■ 개 요

- 학교 시설의 보건위생 및 환경 개선을 통하여 학생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총괄과-245(2013.01.09.)

#### ■ 사업내용

- 학생들이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고 위험이 수반되는 시설에 대하여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한 청소용역 사업
- 대상 : 단설유·초·특수학교
- 금액: 학교당 13,000,000원

## 34. 결핵검사비

<체육건강과 ☎603-3576>

#### ■ 개 요

-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에 대하여 결핵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학생 건강 증진
- 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건강검사규칙

# ■ 사업내용

-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흉부 X-선 촬영
- 고등학교 2.3학년의 경우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검사기관을 선정하여 시행 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학교 자체적으로 학생당 편성금액을 선택하 여 예산편성



○ 대상 : 공립 고등학교 2,3학년

○ 금액: 학생당 2.650원(대한결핵협회 기준), 6.600원(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 35. 급식운영비 지원

<체육건강과 ☎603-3585>

#### ■ 개 요

○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규모별로 학교급식소 운영에 필요한 시설 · 설비 유지비 및 연료비, 소모품(산재예방물품)비 등의 경비 지원

○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급식운영비 부담」

#### ■ 사업내용

○ 급식운영비 지원(학기중 190일, 학생수별 1인 1식당 차등단가 적용)

○ 대상 : 공립 초·중·고·특수학교

○ 금액: 지원단가×지원일수(190일)×학생수

그ㅂ	500명 이것	501~1,000명 1,001명 이상		울릉지역		
구분	300-8 9101	301~1,000~3	1,001 8 9 8	초	중	고
지원단가	300원	250원	200원	350원	350원	350원

## 36. 우수식재료구입비 지원

<체육건강과 ☎603-3585>

#### ■ 개 요

- 학교급식에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우리농산물 사용으로 급식의 질 향상
- 학교급식법 제3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9조

## ■ 사업내용

○ 우수식재료 구입비 지원(학기중 190일)

○ 대상 : 공립 초·중·고·특수학교

○ 금액: 140위×지원일수(190일)×학생수



# 37. 정신건강시범운영비 지원

<체육건강과 ☎603-3577>

#### ■ 개 요

- 학생정신건강서비스지원을 위한 학교 정신건강관리 업무 지원
- 2013 학생정신건강 관리개선 계획[교육부 학생건강총괄과-1118(2013, 2, 20.)]

#### ■ 사업내용

-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등 학교정신건강서비스지원 관련 도구구입, 인쇄료 등 업무추진 경비 지원
- 대상 : 공립 초·중·고등학교
- 금액: 학교당 1,000,000원

#### 38. 1인 1악기 운영

<생활지도과 ☎603-3454>

#### ■ 개 요

- 1인 1악기(1교 1합창단) 교육을 통한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사교육비 절감
- 1인 1악기 활동을 통한 나눔과 배려, 소통으로 학교폭력 예방
- 누구에게나 즐거운 학교.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학교 만들기

## ■ 사업내용

- 1인 1악기 교육으로 음악적 감성 함양을 통하여 밝고 아름다운 학교 분위 기 조성
- 1인 1악기 및 동아리 발표회
  - 입학식, 졸업식, 예술제 등 학교 문화 개선
- (1인 1악기 지역 예선 및 도 대회)
  - 1인 1악기 예선 대회 개최(6월): 지역교육청 자체 계획
  - 1인 1악기 경연 대회 개최(7월): 경상북도교육청 계획
- 대상 : 공립 초·중·고·특수학교
- 금액: 학교당 5,000,000원



# 39. 문화체험학습 지원

<생활지도과 ☎603-3454>

#### ■ 개 요

○ 초등학생의 문화체험학습을 통한 도·농간 문화 이해 증진

#### ■ 사업내용

- 초등학교 문화 체험 학습비 지원
- 도·농간 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선비문화체험, 도시문화체험, 전통문화체험 등
- 대상 : 공립 초등학교
- 금액: 학교당 1,000,000원

# 40. 저소득층학생 수련활동 및 수학여행비 지원

<생활지도과 ☎603-3456>

#### ■ 개 요

-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수련활동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의욕 및 사기 진작
- 교육 복지 차원의 지원 필요성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배려로 복지 사회 구현
- 2011~2014 『명품! 경북교육』

#### ■ 사업내용

○ 선정 순위

순위	대상자	비고
1순위	기초 생활 수급자 자녀, 소년 소녀 가장, 북한 이탈 주민 자녀,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자녀(지자체로부터 통보된 학생에 한함), 시설 수용 학생, 다문화 가정 자녀	
2순위	법정 차 상위 계층 자녀, 지역·직장 건강 보험료 기준	

#### ○ 선정 방법

- 대상자 선정 방법: '저소득층 학생 교육 지원 One-Click 서비스'를 통한 지원 대상자 선정



- 1순위 학생은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 대상자 개인별 증명서 및 지원 근거(심의 결과 등)는 학교에 반드시 비치
- 선정 시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
- 학교에서는 선정심의위원회(복지위원회 등)에서 선정하고 회의록을 반드 시 비치할 것
- 운영상 유의점
  - 선정 대상자 이외의 임의의 타 학생에게 지원 금지
  - 수학여행비는 초・중・고 지원 상한액(산출 근거 참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제 수학 여행비만큼만 지원(특수학교는 해당 초·중·고 급별 지워 상하액)
  - 수련 활동비는 초・중・고・특수학교 지원 상한액(산출 근거 참고)을 초 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제 수련 활동 경비만큼만 지원
- 금액: 아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제 경비만큼 지원

급별	단위	수련활동비	수학여행비
초	학생당	83,000원	140,000원
중	학생당	83,000원	160,000원
고	학생당	83,000원	222,000원

# 41. 학교폭력예방 학급운영비 지원

<생활지도과 ☎603-3453>

#### ■ 개 요

- 학교폭력 예방을 통하여 즐겁고 안전한 학교 조성 및 학교폭력에 합리적으 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 구축
-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학급별로 실시 될 수 있도록 지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5.1.) 및 동법 시행령 (2012.5.1.)
- 교육부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2013.7.23.)
  - 학교폭력 예방 관련 학교회계 예산 적극 편성(기본운영비의 3% 내외)

#### ■ 사업내용

○ 학급 및 학년 단위 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 예방 자료 구입, 기 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위한 경비 지원



○ 대상 : 공립 초·중·고·특수학교

○ 금액: 학급당 100,000원

# 42. 책임교사 수업경감 및 대안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생활지도과 ☎603-3453>

#### ■ 개 요

- 학교폭력 예방을 통하여 즐겁고 안전한 학교 조성 및 학교폭력에 합리적으 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 구축
- 책임교사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여 수업 경감 및 예방프로그램 활성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5.1.) 및 동법 시행령 (2012.5.1.)
- 교육부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2013.7.23.)
  - 학교폭력 예방 관련 학교회계 예산 적극 편성(기본운영비의 3% 내외)

#### ■ 사업내용

- 책임교사 수업 경감을 위한 지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안프로그램 운 영. 기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위한 경비 지원
- 대상 : 공립 초·중·고·특수학교
- 금액: 3,000,000원~5,000,000원 사이에서 학교규모별 실 소요액 편성

# 43. 당직면제비

<총무과 ☎603-3618>

#### ■ 개 요

- 각급 학교 교직원의 당직근무부담 경감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 근무여건 개선을 통하여 교직원의 사기 진작

#### ■ 사업내용

- 당직전담요원고용, 경비용역업체 위탁, 교직원 재택당직,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운영 등 지원
- 최저임금법의 반영



# [2014년 최저임금]

-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제2013-35호) **2014년 최저임금 시급 5,210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10% 감액적용: 시급 4,689원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감액적용: 2014년 12월 31까지 유효
- ※ 감시·단속적 근로자[근기법 제63조(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제외)]
  - : 비교적 피로가 적고 힘들지 않은 **감시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아파트·건물 경비 원·회사 수위, 물품 감시원으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 ☞ 사용자: 직접 계약시→기관장, 용역 계약시→용역회사 대표(확인 필요)
- 근로기준법의 반영

주요사항	비고
■ 근로기준법 63조에 의거 <b>감시근로자</b> 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제외 되나 단, 아래의 규정은 적용・보장 - 근로기준법 56조 □ 야간 근로 시(22:00~06:00) 시급의 50% 가산수당 - 근로기준법 60조 연차 유급 휴가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의 근로자의 날(5.1.) 유급 휴일은 적용	※ 연차유급휴가는 관계자(용역 회사,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자가 희망할 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 록 조치 - 대체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미실시해서는 안됨

#### ※ 연차유급휴가

- 계속근로 1년이상자 연간 8할 이상 출근자 15~25일
- · 계속근로 1년미만자 1개월 개근 시(15일 이상) 1일

# ■ 경비용역업체 위탁 계약시 유의 사항

-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참고)
- 도급자(발주자) 확인 사항



-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 ※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 계약서 작성 시 근로시간(토・공휴일 구분)과 휴게시간을 반드시 명시하여 향후 당사자 간 다툼 예방
- 학교 체제 시간을 고려하여 적정 근로시간 산정ㆍ지급
- 3자 간(도급인↔수급인, 도급인↔근로자) 계약서 공유
- 대상 :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 ※ BTL학교 제외
- 금액: 학교별 소요경비 반영

# 44. 농업계고 정원조정 대체인건비

<행정지원과 ☎603-3662>

#### ■ 개 요

-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원된 농업계고등학교에 대체 인건비 지원
- 분야별 조직진단 결과 기관별 기능 및 정원 조정계획 통보[기획예산과-6780(2008. 9. 25)]

## ■ 사업내용

- 조직진단에 따른 농업계고 인력 감축학교에 대체인건비 지원
- 대상 및 금액
  - 김천생명과학고(3명): 60,236원×220일×3명
  - 한국생명과학고(2명): 60,236원×220일×2명

# 45. BTL 사업학교 인건비

<행정지원과 ☎603-3662>

#### ■ 개 요

- BTL사업학교의 신설 및 전면개축학교의 조무원 정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지원
- BTL사업학교에 대한 인력 조정 계획 통보[기획예산과-7125(2009, 8, 28)]

#### ■ 사업내용

O BTL신설 및 전면개축교에 초단기근로자 인건비 지원



○ 대상 : 포항(해맞이초, 원동초, 양덕초, 학천초, 포항송곡초, 장성중, 포항포은중),

경주(감포초), 안동(안동옥동초), 구미(봉곡초,정수초,옥계동부초,

옥계동부중), 경산(평산초, 봉황초), 칠곡(인평중, 북삼고)

○ 금액: 학교당 5,700,0000원

# 46. 학교컴퓨터 및 영상장비 구입

<행정지원과 ☎603-3774>

#### ■ 개 요

○ 각급 학교의 교육 정보 활용 환경 유지 관리를 위해 컴퓨터 및 영상장비 교체 및 신규 도입

#### ■ 사업내용

(단위: 천원)

구	분	적정교체주기	단가	용도	최소보유수량
개인용컴퓨터 (PC)			1,000	업무용	교직원 1인당 1대
		5년		교육용	수업용 교실 1실당 1대
				실습용	실습실 1실당 학급 최다 학생수+1대
영상 <sup>7</sup>		7년	1 000	교육용	수업용 교실 1실당 1대
(TV 또는 프로젝터)		<i>1</i> 년	1,900	실습용	실습실 1실당 1대

- **각급 학교 자체 연도별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 적정 수량이 도입 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연도에 도입 물량의 편중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위는 최소 권장 사항에 대한 기준이므로 각급 학교의 사정에 따라 적의 조정 할 수 있음
- 금액: 학교당 실소요액 편성

# 47. 교무행정사 인건비

<행정지원과 ☎603-3715>

#### ■ 개 요

-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으로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 각급학교 교원행정 업무경감을 위한 직종통합(학교회계직원) 운영 계획



[행정예산과-5560(2011, 7, 22.)]

○ 2014년 학교회계직원 연봉 기준액 인상 계획 [학교지원과-10791(2013.9.30.)]

#### ■ 사업내용

○ 초・중・고・특수학교에 교무행정사(교무) 1명 인건비 지원

○ 대상 : 공립 초·중·고·특수학교

○ 금액: 학교당 21,649,000원(365일 기준)

#### 48. 교과용 도서 지원

<학교지원과 ☎603-3704>

#### ■ 개 요

- ○「교육기본법」제8조.「도서·벽지교육진흥법」제3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과-7141(2012.10.10.) 『2013년 교육비특별회계 교부 예정 관련 '고교 저소득층 교과서 구입비 지원' 예산 수립 안내 』

#### ■ 사업내용

-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대상자에게 교과용 도서 지원
  - 대상자 : ①초·중학교 학생, ②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③도서·벽지 고등학교 학생. ④특수교육대상자(전공과 및 만3세미

만 장애영아)

- 고등학교 재학 저소득층 자녀 교과용 도서 지원
  - 교과서 외형체제 및 가격 자율화에 의해 2~3배의 교과서 가격 인상이 예상 되어, 갑자기 늘어난 고교 저소득층자녀의 책값 부담을 해소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과용 도서 구입비 전액을 지원
  - 전액지원대상 : ①한부모가족, ②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연금, 우선돌봄차상위)
  - 일부지원대상 : ③기초생활수급자(2013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학생 1인 당 125.900원(=교재88.400원+부교재37.500원)을 지원, 학교에 서는 학생 1인당 88,400원 초과금액만 지원)
- 대상 : 공립 초·중·고·특수학교
- 금액: 학교별 소요경비 반영



# 49. 인터넷 통신비

<재무정보과 ☎603-3783>

#### ■ 개 요

- 각급 기관의 안정적인 인터넷 사용 환경을 위한 단설유, 초, 중, 고, 특수학교 인터넷 통신비 지원
- 명품 경북교육 실현을 위한 행정정보화종합발전 기본계획
- 12학급 이하 단설유·초·중학교에 40MBps속도 요금 지원(월 374,000원)
- 13학급 이상 단설유·초·중학교에 200MBps속도 요금 지원(월 471,000원)
- 고·특수학교에 200MBps속도 요금 지원(월 471,000원)
- 대상:유·초·중·고·특수학교
- 금액: 학교별 해당단가×12개월



#### [첨부2]

# 2014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 추가지원사업

- 학교기본운영비 추가지원사업비로 총액 배분하는 목적성 경비
- 가급적 배부예산을 반영하고, 학교실정에 맞게 예산조정(부족분 및 잉여금은 학교기본운영비로 충당)
- 학교별 추가지원사업 내역은 경상북도교육청 기획조정관 홈페이지 참조

(단위 : 천원)

연번	소관부서	추가지원 사업명	14년본예산	급별	비고
1	교육정책과	특수교육실무사인건비	5,540,640	유,초,중,고,특	
2	교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네트워크 운영	1,030,500	<del>٩</del>	
3	교육과정과	3세대하모니자원봉사자 지원	2,604,450	ਜ	
4	교육과정과	유치원방과후시간제기간제강사 지원	7,104,000	ਜ	
5	교육과정과	유치원토요방과후과정 운영	63,000	<del>П</del>	
6	교육과정과	유치원교무행정사인건비 지원 (병설유치원)	692,028	<del>٩</del>	
7	과학직업 교육과	통폐합학교 학과개편 기자재구입비	1,400,000	고	신규
8	과학직업 교육과	영재교육기관운영 (영재학급운영비)	1,174,000	초,중,고	
9	체육건강과	전임코치 인건비	6,450,429	초,중,고	
10	체육건강과	급식학교 인건비	20,579,126	유,초,중,고,특	
11	체육건강과	소규모학교급식비 지원	6,800,176	유,초,중,고	
12	생활지도과	학생보호인력 (배움터지킴이)운영	4,389,000	초,중,고,특	
13	학교지원과	학교회계직 맞춤형복지비	1,972,427	유,초,중,고,특	
14	학교지원과	학교회계직원수당 지원	11,865,336	유,초,중,고,특	
15	학교지원과	학교회계직원 기본급 추가지원	1,124,130	초,중,고,특	
16	학교지원과	기숙형고등학교기숙사 운영비 지원	961,022	고	
17	학교지원과	차량임차비	2,584,064	초,중,특	
18	학교지원과	차량운영비	2,546,400	유,초,중,고,특	
19	학교지원과	안전도우미 인건비	3,983,710	유,초,특	
20	학교지원과	유치원차량 운영비	8,897,348	<del>۾</del>	
21	재무정보과	고등학생학비 지원	2,018,016	고	
	합계		93,580,602		



# 특수교육실무사 인건비

<교육정책과 ☎603-3395>

## ◎ 사업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 문제행동 관리 및 학교 생활적응 지원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특수교육의 질 제고

## ◎ 사업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2013학년도 경북특수교육운영계획[교육정책과-1541(2013, 2, 5,)]

#### ◎ 사업 내용

○ 특수교육실무사가 배치된 학교에 인건비 지원(340명)

# ◎ 산출 기초

○ 지원기준: 1명당 16,296,000원 지원

# ◎ 해당 학교

- 공립유치원(단설, 병설) : 3개원(4명)
- 공립초등학교: 153교(183명)
- 공립중학교: 66교(81명)
- 공립고등학교 : 32교(43명)
- 공립특수학교 : 3교(29명)
- ※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 2014년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결과에 따라 해당학교가 변경될 수 있음



# 2 유치원 교육과정 네트워크 운영

<교육과정과 ☎603-3432>

#### ◎ 사업 목적

- 중심유치원과 인근 지역 유치원간의 네트워크 조직·운영으로 공동교육 과정 운영
- 교육과정 관련 각종 행사, 체험활동, 교재교구 공유, 교사연수 및 부모교육 등의 공동 운영을 통한 효율성 향상으로 유아교육의 질 제고

#### ◎ 사업 근거

○ 유아교육선진화 사업(2009.11.14) 및 경북유아교육운영계획

#### ◎ 사업 내용

- 중심유치원 133개원 및 협력유치원 331개원의 운영비 지원
- 공동체험운영비 20개원(2014년 4학급이상 유치원) 지원

# ◎ 산출 기초

- 중심유치원 133개원×4,000,000원=665,000,000원
- 협력유치원 331개원×300,000원=165,500,000원
- 공동체험운영비 20개원×10,000,000원=200,000,000원

# ◎ 해당 학교

○ 공립 유치원 465개원



#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지원

<교육과정과 ☎603-3432>

#### ◎ 사업 목적

-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한 인력 지원으로 교사의 부담 경감 및 방과 후과정 운영의 효율화
- 중고령 여성 유휴 인력의 자원봉사자 활용으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육아경험 활용
- 핵가족화의 확대로 조모의 사랑을 받을 기회가 부족한 유아들에게 할머니의 정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감 고취

## ◎ 사업 근거

- 여성정책지원과-630(2008. 2.28.)
- 경북유아교육운영계획

# ◎ 사업 내용

- 하모니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 3학급(2014년 기준) 이상 유치원: 원당 2명(12개월) 73개원\*2명=146명
  - 1~2학급(2014년 기준) 유치원: 원당 1명(12개월) 391개원\*1명=391명
- 상해보험료 1인 연간 50.000원

# ◎ 산출 기초

- 활동비
  - 1일 20,000원×20일×12개월×537명=2,577,600,000원
- 상해보험료: 50,000원×537명=26,850,000원

# ◎ 해당 학교

○ 공립 유치원 464개원



# 4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강사 지원

<교육과정과 ☎603-3432>

#### ◎ 사업 목적

○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한 인력 지원으로 교사의 부담 경감 및 방과 후과정 운영의 효율화

## ◎ 사업 근거

- 유아교육법 제23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방과후과정 운영 등 에 대한 지원)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제1항5호 신설,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 록 할 필요가 있을 때
-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추진계획(유아교육정책과 -552, 2013.4.19.), 기간제교원배치: 방과후과정반에 기간제교원 우선 배치
- 경북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2013. 7. 1.)

## ◎ 사업 내용

- 교육부의 2014 유치원교사 정원 가배정 자료에 의거 방과후 과정 학급의 교사 정원 미배정으로 인한 시간제기간제강사 지원
  - 1일 4시간 운영, 연간 운영, 호봉제(10호봉기준)
  - 학급당 1명(단, 방과후 과정 정규교사 배치 유치원에는 정규교사 배치 수 많큼 감원한 수 지원)

# ◎ 산출 기초

○ 시간당 기준단가×463개원=7,104,000,000원

# ◎ 해당 학교

○ 공립 유치원 463개원



# 5 유치원 토요방과후과정 운영

<교육과정과 ☎603-3432>

#### ◎ 사업 목적

○ 맞벌이 부부 및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증가에 따른 토요방과후과정 운영 수요 증가로 인한 운영 지원

## ◎ 사업 근거

- 유아교육법 제27조(방과후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 경북유아교육운영계획

#### ◎ 사업 내용

- 토요방과후과정 운영비 지원
  - 월 2회 운영 유치원 14개원
  - 월 4회 운영 유치원 28개원

# ◎ 산출 기초

- 운영비
  - 월 2회×50,000원×9개월×14개원=12,600,000원
  - 월 4회×50,000원×9개월×28개원=50,400,000원

# ◎ 해당 학교

○ 유치원 42개원



# 6 유치원 교무행정사 인건비(병설유치원)

<교육과정과 ☎603-3434>

#### ◎ 사업 목적

- 교원 업무 경감을 통한 유치원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사기진작 및 행정 업무 경감에 기여

# ◎ 사업 근거

○ 경북 유아교육 운영계획(교육과정과-1913, 2012.1.31.)

#### ◎ 사업 내용

- 유치원 **교무행정사** 인건비 지원으로 교원 행정업무 경감
  - 지원기간 : 2014. 3. 1. ~ 2015. 2. 28.
  - 지원기준 : 공립 병설유치원 30명 배치 및 인건비 지원
- 인건비 지원기준(365일)
  - 인건비(퇴직금, 보험료,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포함): 1인 15.581천원
  - 각종수당(교통보조비, 보육수당, 장기근무가산금 등)
    - : 자녀수, 부양가족수, 근무기간 등에 따라 산출(도교육청 학교회계직원 담당부서 지침에 따름)

# ◎ 산출 기초

- 인건비 : 원당 23.067.600원
- 각종수당 : 수당별 단가 및 자녀수, 부양가족수, 근무기간 등에 따라 산출

# ◎ 해당 학교

○ 공립 병설유치원(특수학급 제외) 30개원



# 통폐합학교 학과개편 기자재 구입

<과학직업교육과 ☎603-3523>

#### ◎ 사업 목적

- 포항과학기술고 학교통폐합으로 인하여 학교 개축 후 실습실 기자재 정비
- 실습실 정비를 통한 기능 숙련을 통한 취업역량강화

#### ◎ 사업 근거

- 학과개편에 따른 기자재구입 및 실습실 조성을 위한 특별 예산 신청(포항 과학기술고-5369(2013.8.22.))
- 과학직업교육추진계획(과학직업교육과-1944(2013.2.19.))
- 특성화고 실습실 시설·설비 기준(경북교육청 고시 제2006-17호 )

#### ◎ 사업 내용

- 사업대상교: 포항과학기술고
- 사업규모: 산업계열 실습실 등 총 12실 조성
  - 해양계열 동력기계실습실, 기계공작실습실, 선박전기전자실습실, 산업부강의실
  - 물류계열 컴퓨터실, 물류관리실, 물류준비실, 회계정보실
  - 뷰티계열 헤어디자인실, 삼퓨실, 피부관리실, 메이크업실

# ◎ 산출 기초

계열	실습실명	산출금액(원)	계열	실습실명	산출금액(원)
	동력기계실습실	141,000,000		헤어디자인실	141,050,000
	기계공작실습실	295,500,000		샴푸실	23,000,000
해양	선박전기전자실습실	130,500,000	뷰티	피부관리실	166,000,000
	산업부강의실	64,250,000		메이크업실	89,550,000
	소계	631,250,000		소계	419,600,000
	컴퓨터실	109,100,000		합 계	1,400,000,000
	물류관리실	119,900,000			
물류	물류준비실	16,200,000			
	회계정보실	101,100,000			
	소계	346,300,000			



# 8 영재교육기관운영(영재학급운영비)

<과학직업교육과 ☎603-3515>

#### ◎ 사업 목적

- 영재학급 승인을 통한 영재교육대상자 수 증대
- 2013년도 영재교육기관의 기반 확충과 영재교육의 질 제고
- 영재교육 영역의 다양화 및 기관의 다양화

#### ◎ 사업 근거

-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2002.4.18, 대통령령 17578호)
- 제2차 영재교육 진흥 종합계획
- 한국교육개발원 영재센터-1313(2012.7.19) 2013 영재교육 예산편성 반영 협조

#### ◎ 사업 내용

- 지역공동영재학급 운영비 지원
- 15개영역[수학, 과학, 발명, 정보, 영어, 언어, 인문, 음악(관현악, 국악, 성악), 미술, 체육(축구, 수영, 배구, 축구, 야구)]
- 대상학교
  - 대상: 공립 초 91교, 중 28교, 고 1교, 총 : 120교

# ◎ 산출 기초

- 수학, 정보, 인문 : 학급당 8.000.000원
- 과학, 발명 : 학급당 9,000,000원
- 예·체능 : 학급당 10,000,000원



# 전임코치 인건비

<체육건강과 ☎603-3563>

#### ◎ 사업 목적

○ 학교운동부 지도교사의 수업결손 방지 및 육성종목의 해당종목 특기 교사 가 없는 학교에 코치를 배정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 사업 근거

- 학교체육 발전 5개년 계획
- 체육건강과-5923(2012.4.23) 학교운동부 전임코치 처우개선(안)

#### ◎ 사업 내용

- 인원: 300명(초 103명, 중 108명, 고 89명)
- 학교: 공립 234교(초 88교, 중 86교, 고 60교)

# ◎ 산출 기초

- 전임코치 1인당 총인건비: 27,217,000원
  - 1인당 연봉액 18,542,000원(월급여 1,545,170원)
  - 연장근로(초과근무)수당: 3,429,000원
  - 연차수당: 762,000원
  - 명절휴가비: 200.000원
  - 장기근무가산금: 600,000원
  - 5대보험: 2,008,000원
  - 퇴직적립금: 1,676,000원



# 10 급식학교 인건비

<체육건강과 ☎603-3585>

#### ◎ 사업 목적

- 급식인력 인건비 지원을 통한 학교급식비 학부모 부담 경감
- 영양사 및 조리사 등 자격증 소지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급식 질 향상

#### ◎ 사업 근거

- 학교급식법 제7조 및 제8조, 시행령 제9조
- 학교급식 기본방향

#### ◎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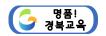
- 정규직 영양(교)사가 미 배치된 50명이상 공립 단설유치원 및 공립 초ㆍ 중·고·특수학교 조리교에 학교회계직 영양사 인건비 지원(공동관리교 및 영양교사 정원이 있는 조리교는 제외)
- 정규직 조리사(기능직공무원)가 미 배치된 50명이상 공립 단설 유치원 및 공립 초・중・고・특수학교 조리교의 학교회계직 조리사 인건비 지원(기능직 공무원 조리사 정원이 있는 조리교는 제외)
- 조리사 1명인 3식 조리교에 학교회계직 조리사 1명 추가 지원
- 공립 초등학교 조리교에 조리원 1명 지원
- 운반배달급식 보유 조리교에 조리원 1명 추가 지원(단, 30명 이하는 제외)
- 100명 이하 공립 중·고등학교 조리교에 조리원 1명 지원
- 특수학교 조리원 인건비 지원

# ◎ 산출 기초

- 영양사 인건비(교육비특별회계) : 23,726,000원(연봉일수 365일)
- 조리사 인건비(교육비특별회계) : 16.802.000원(연봉일수 275일)
- 조리원 인건비(교육비특별회계) : 16.015,000원(연봉일수 275일)
- 조리원 인건비(수익자부담) : 1,108,000원(근무일수 상향분 20일)

#### ◎ 해당 학교

- 공립 유치원 : 단설유치원 9개원, 27명
- 공립 초등학교 : 449교, 1,812명
- 공립 중학교 : 117교, 697명
- 공립 고등학교 : 60교, 461명
- 공립 특수학교: 3교, 8명



# 11 소규모학교 급식비 지원

<체육건강과 ☎603-3582>

#### ◎ 사업 목적

○ 학생수 100명 이하 초등학교 및 도서지역 중·고등학교의 소규모학교에 급 식비를 지원하여 농산어촌지역 학생들의 도시로의 유출을 막고, 소외지역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함

## ◎ 사업 근거

- 교육감 공약사항
- 학교급식법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 학교급식법시행령 제10조「급식비 지원기준 등」

#### ◎ 사업 내용

- 100명 미만 초등학교 및 그에 속한 병설유치원
- 울릉지역 초·중학교 학생 및 울릉고등학교 재학생 중 면지역거주 학생
- 통·폐합 초·중학교 학생: 통합학교로 지원

## ◎ 산출 기초

○ 병설유치원 : 2,200원×2,772명×190일= 1,158,696,000원

○ 초등학교 : 2,200원×13,198명×190일=5,516,764,000원

○ 중학교 : 2,600원×218명×190일=107,692,000원

○ 고등학교 : 2.800원×32명×190일=17.024,000원

합계: 6,800,176,000원

## ◎ 해당 학교

○ 유치원 : 병설유치원 256개원, 분교병설유치원 21개원

○ 100명 미만 소규모초등학교 : 본교 276교, 분교 48교

○ 울릉군지역 중학교: 4교

○ 고등학교 : 1교(울릉고등학교)



# 12 학생 보호 인력(배움터지킴이운영) 운영

<생활지도과 ☎603-3492>

#### ◎ 사업 목적

- 안전 환경 조성으로 학교 폭력 및 성폭력 사전 예방
-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시 발생하는 사고 예방으로 사회적 우려 해소
- 학교폭력 예방을 통하여 즐겁고 안전한 학교 조성 및 학교폭력에 합리적 대처 위한 대응 시스템 구축

#### ◎ 사업 근거

- 2013 명품 경북교육(온종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
- 2014년 시·도교육청 정량 평가 대비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2012. 3. 21.)호 및 동법 시행령(2012. 5. 1.)호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문화과-5248(2010. 9. 8.)호

## ◎ 사업 내용

- 배움터지킴이 봉사 활동비 지원
- 배움터지킴이 주요 활동 내용
  - 등·하교 지도 및 취약 시간대 학교 안팎 순찰
  - 학교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보호 및 선도 활동

# ◎ 산출 기초

○ 7,000,000원×627명

# ◎ 해당 학교

○ 공립 초등학교 : 456명

○ 공립 중학교: 94명

○ 공립 고등학교: 72명

○ 공립 특수학교: 5명



# 13 학교회계직원 맞춤형 복지비

<학교지원과 ☎603-3715>

#### ◎ 사업 목적

○ 학교회계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통한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

#### ◎ 사업 근거

○ 학교지원과-2398(2013. 3. 12.) 2013년 학교회계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계획

#### ◎ 사업 내용

-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학교회계직원 맞춤형복지비 지원
- 지원총액: 1,972,427,000원

# ◎ 산출 기초

○ 지원기준 : 1인당 400.000원

# ◎ 해당 학교

○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 14 학교회계직원 수당 지원

<학교지원과 ☎603-3715>

## ◎ 사업 목적

○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

#### ◎ 사업 근거

○ 학교지원과-899(2013.2.1.) 2013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

#### ◎ 사업 내용

○ 대상 : 교육부 공동임금체계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이면서 주평균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인자 중 2014. 3. 1 기준 재직하고 있는 자

※ 교육부 공동임금체계 적용대상자 : 일할단가 47,560원, 49,930원, 53,100원

- 기술정보수당: 영양사(영양사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월 2만원 지급
- 교통보조비: 재직자 중 월 6만원 지급
- 가족수당: 월 8만원 한도(배우자 월4만원, 직계존·비속 월 2만원 지급) 단. 셋째자녀 이후는 가족수당 2만원과 가산금 3만원 추가지급
- 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교회계직원에 한해 연1.792.000원 한도내에서 지급(1/4분기~4/4분기)
- 장기근무가산금: 2014. 3. 1.과 2014. 9. 1. 기준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자에 대해 월 5만원~13만원 지급
- 위험근무수당: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기구를 상시 사용하는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 하는 조리사, 조리원에 대해 월 5만원 지급(1월, 8월 방학 제외)

# ◎ 산출 기초

○ 각급 학교별 실소요액

# ◎ 해당 학교

○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 15 학교회계직원 기본급 추가 지원

<학교지원과 ☎603-3715>

#### ◎ 사업 목적

-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확대
- 학교회계직원의 연봉기준일수 확대를 통한 교직원 업무경감 도모

## ◎ 사업 근거

- 행정예산과-5560(2011. 7. 22.) 각급학교 교원행정 업무경감을 위한 직종통 합(학교회계직원) 운영 계획
- 학교지원과-899(2013.2.1.) 2013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
- 학교지원과-10791(2013.9.30.) 2014년 학교회계직원 연봉 기준액 인상 계획

#### ◎ 사업 내용

- 직종통합에 따른 교무행정사(과학, 전산)의 인건비 지원 1인당 5,353천원(90일지원) ※ 교무행정사(교무) 인거비는 학교기본운영비에 통합 지원
- ◎ 산출 기초
  - 각급학교 교무행정사(과학, 전산) 현원×5,353,000원

# ◎ 해당 학교

○ 공립 초·중·고·특수학교



# 16 기숙형고등학교 기숙사운영비 지원

<학교지원과 ☎603-3703>

#### ◎ 사업 목적

- 교육낙후지역에 기숙형고교 지정·기숙사 설립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
- 교육 기회를 보장해 주는 형평성과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보

## ◎ 사업 근거

○ 기숙형고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도개선(학교지원과-2822, 2012.9.26.)

####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및 예산액
  - 대상: 기숙형고교 공립 21개교
  - 예산액: 총961,022천원
- 기숙사 운영비
  - 기숙사비 경감목적으로 한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학교운영비 지원(기숙사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일반수용비)
- 저소득층자녀기숙사비
  - 저소득층자녀(사회적배려대상자)를 학교에서 선정하여 월기숙사비를 지원
  -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인원 및 금액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운영

# ◎ 산출 기초

○ 학교별 교당기본금, 자치단체대응투자 추가지원금,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금 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차액의 보정율 ±50% 가감하여 산정함

# ◎ 해당 학교

○ 공립 고등학교 21교



# 17 차량임차비

<학교지원과 ☎603-3704>

## ◎ 사업 목적

○ 농어촌 지역 학생의 통학편의 지원

#### ◎ 사업 근거

-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교과부 지방교육재정과-303(2012.01.19.) 및 학교지 원과-3734(2012.03.19.)]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 규칙

## ◎ 사업 내용

○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한 차량 임차비 지원

# ◎ 산출 기초

○ 지역별, 교별 여건을 반영한 임차 필요액 지원

# ◎ 해당 학교

○ 초등학교 : 공립 51개교

○ 중학교 : 공립 4개교



<단위: 천원>

# 18 차량운영비

<학교지원과 ☎603-3704>

## ◎ 사업 목적

○ 통학차량의 유지 및 관리비 지원

#### ◎ 사업 근거

-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교과부 지방교육재정과-303(2012.01.19.) 및 학교지 원과-3734(2012.03.19.)]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 규칙

## ◎ 사업 내용

○ 통학차량 운행에 따른 유류비, 수리비 등 운영비 지원

# ◎ 산출 기초

학생통학용 고등학교 특수학교 3000cc미만 6000cc미만 9000cc미만 9000cc이상 3.700 5,500 8,000 8,400 12,000 18,000

# ◎ 해당 학교

○ 유치원 : 공립 3개원

○ 초등학교 : 공립 230개교

○ 중학교 : 공립 14개교

○ 고등학교: 공립 6개교

○ 특수학교 : 공립 3개교



# 19 안전도우미 인건비

<학교지원과 ☎603-3704>

# ◎ 사업 목적

○ 유·초·특수학교 학생의 통학안전을 위한 보호자(안전도우미) 인건비 지원

## ◎ 사업 근거

-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행자의 의무)
- 경상북도교육청 통학차량 관리 지침[총무과-2752(2007. 3. 3.)]

#### ◎ 사업 내용

○ 어린이 통학차량에 안전도우미를 배치하고 인건비를 지원

# ◎ 산출 기초

- 2014년 유치원 및 초등학교 안전도우미 인건비(1인당 9,804천원)
- 기본급 : 60,236원('13일용직노임단가적용)/8시간×4시간×1명×265일= 7,981,270원
- 연차수당 : 60,236원/8시간×4시간×1명×10일= 301,180원
- 퇴직적립금 : 8,282,450원/12월= 690,210원
- 4대보험료 : 831,390원
- 2014년 특수학교 안전도우미 인건비(1인당 16,015천원)
- 기본급 : 46,770원('13교과부공동임금적용)×1명×275일= 12,861,750원
- 연차수당 : 46.770원×1명×10일= 467.700원
- 명절휴가보전금: 200.000원×1명= 200.000원
- 퇴직적립금 : 13,529,450원/12월= 1,127,450원
- 4대보험료 : 1,358,080원

# ◎ 해당 학교

○ 유치원 : 공립 3개원

○ 초등학교 : 공립 229개교

○ 특수학교 : 공립 3개교



# 20 유치원 차량운영비

<학교지원과 ☎603-3704>

#### ◎ 사업 목적

○ 공립유치원 원아의 안전한 등·하원을 위한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 ◎ 사업 근거

- 2013 공립유치원 통학편의 지원 시·도담당자 회의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 실 유아교육과 주관(2012.9.10.)]
- 2013년도 유아교육비예산 사업설명 송부[교육부 유아교육과-1043(2013.2.22.)]

#### ◎ 사업 내용

- 공립유치원 원아의 등·하원시 통학편의 제공을 위해 차량임차비(운전원·안전 도우미 인건비 포함) 및 차량운영비(단설유·초 자차 보유학교)를 지원
- 반드시 등·하원 통학용 차량운영비로만 집행

## ◎ 산출 기초

- 2013 교육부 지원기준(공립 유치원)
- 병설 20,000천원, 단설 30,000천원( '14년 지원기준 미정)
- 지역별 교육부 지원기준 총액 범위내에서 유치원 단독 또는 공동계약에 따른 유치원 통학차량 임차비 및 자차보유학교에는 차량운영비를 지원
- 차량임차비 1대당 50.000천원 이내(근거: 사립특수 차량임차비(3개교, 5대) 평 균)
- 차량운영비 1대당 5,000천원 이내(근거: 학교지원과-9280(2013.08.29.)호 관련, 공립유치원 중 자차 이용학교 '14년 소요액 평균')

# ◎ 해당 학교

○ 공립 병설유치원 : 389개원

○ 공립 단설유치원: 9개원



# 21 고등학생학비 지원

<재무정보과 ☎603-3755>

# ◎ 사업 목적

- 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
- 교육 기회의 균등한 제공으로 교육복지 구현

# ◎ 사업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3조

# ◎ 사업 내용

○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자녀 및 차상위 가정 자녀의 고등 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감면에 따른 운영비 결손액 지원

# ◎ 산출 기초

○ 63,700원×7,920명×4분기=2,018,016,000원

# ◎ 해당 학교

○ 공립 고등학교: 93교